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2 2004 적 산정표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	석회석부두	2,573.00	0.00	비과세대상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 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7호증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 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선박에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항만시설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573.00
	2	물양장	6,558.00	0.00	비과세대상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 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하역한 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야적장으로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6,558.00
	3	호 안	6,460.00	0.00	비과세대상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얹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 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사업장 시설을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6,460.00
	4	케이블터널	38,697.36	7,346.57	면적산출 오류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 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 공문(갑가제25호증)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 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 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 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 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 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면적을 인정함.	38,697.36
	5	케이블보호철판	1.50	0.00	비과세대상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 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이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 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정착 구조물로 보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6	EDB 맨홀	2.56	0.00	기과세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35,36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7	케이블 트레이	11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 되어야 함.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을제25호증37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8	EDB 맨홀	26.94	0.00	기과세	1. 기력 1~6호기 캐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 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케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케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케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101내지 103 을제25호증128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상동	0.00
	9	케이블시설	0.70	0.00	면적중복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 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갑가제3호증 1내지3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104 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상동	0.00
	10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	1,487.62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37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1	케이블 터널 345kV	0.00	898.36	면적산출오류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 *2015.11.17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 (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0
	12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858.0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상동	0.00
	13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433.2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1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208,209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4	CWP 케이블 트레이	3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8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5	옹벽 1,2,3 등	19,173.62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얽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을제26호증116내지119, 을제26호증27내지129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변석 정정	사업장 시설이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담, 경계,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9,173.62
	16	옹벽24	1,040.0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염보리 741)	갑가 제57호증, 갑가 제58호증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 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을제26호증106 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 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17	옹벽25-27	3,194.12	0.00	비과세대상	비탄방지펜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 을제26호증107,108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외부 유출과 저탄장으로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담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3,194.12
	18	옹벽28-30	7,233.4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비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109내지111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19	옹벽 31,32	13,185.00	0.00	비과세대상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 을제26호증112,113	이 목록 순번 3번 기재 호안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로, 원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을 제1호증의2),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함.	13,185.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0	옹벽34-1,34-2,54~56	8,290.65	0.00	비과세대상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 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저탄장 침전조를 만들기 위해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8,290.65
	21	옹벽57,58	1,581.2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을제26호증131 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상동	1,581.20
	22	옹벽59~62	3,152.4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쳐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을제26호증132 을제26호증133	상동	3,152.40
	23	옹벽63	27,280.00	0.00	비과세대상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갑가 제57,58호증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 ※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을제26호증134 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 을제47호증2: 수문출입구사진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24	옹벽11	304.92	0.00	비과세대상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갑가제3호증의3 1면, 갑가제3호증의2 1면 갑가제3호증의3 5면	폭 30.2m, 길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 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을제26호증93 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이 연적에는 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304.92
	25	옹벽17	23.46	0.00	기과세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을제26호증98 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사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옹벽에 해당하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케이블터널 시설과 별도로 시공한 시설물로 보임.	23.46
	26	옹벽64~66	3,570.00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1.8m와 4.4m 및 1.5m로 기 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임.	을제26호증135,136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우수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3,570.00
	27	2부두Air라인	11.50	0.00	오류	피고가 2005년부터 과세한 건임		당초 원고가 공기배관으로서 2006년부터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한 시설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을제32호증5© 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실무해설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1.5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8	스팀관	150.00	150.00		다툼없음.			을제32호증67,68		150.00
	29	스팀관	819.00	819.00		다툼없음.			을제32호증23,24		819.00
	30	법면	57,140.00	0.00	비과세대상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갑가제72호증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흄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 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원고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 을제37호증5,6: 시설을시설내역 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흄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법면 지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흄관, 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57,140.00
	31	CWP 옆 구조물	6,045.20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 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처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 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을제26호증1~137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변적 정정	시설물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타설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므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서 연면적에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계장치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을제15호증의 순번 17-19, 을제26호증의1)	6,045.20
	32	POND(연못)	21,575.25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돔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 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업증 완료함)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26호증129내지133 을제34호증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는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0두1744 판결 참조), POND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저탄장 침전 시설로서 그 바닥 면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0.00
	33	공업용수저수지	115,153.00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포리 720잡).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74호증1내지3	원고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 시설	33	남부회처리장	1,360,36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울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울제75호증	원고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바닥 면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0.00
	34	북부회처리장	1,072,59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상동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35	케이블 터널 154kV	336.14	336.14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36	항만시설(1부두) MT DOCK	7,242.00	7,242.00		다툼없음					7,242.00
	37	ACESS ROAD	1,322.00	1,322.00		다툼없음					1,322.00
	38	CAT WALK-1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39	CAT WALK-2	78.00	78.00		다툼없음					78.00
	40	CAT WALK-3	40.00	40.00		다툼없음					4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청본 원법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1	CAT WALK-4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42	MD-1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3	MD-2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4	MD-3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5	MD-4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6	항만시설(2부두) MT DOCK	7,574.00	7,574.00		다툼없음					7,574.00
	47	ACESS ROAD	1,206.00	1,206.00		다툼없음					1,206.00
	48	CAT WALK-1	136.00	136.00		다툼없음					136.00
	49	CAT WALK-2	40.00	40.00		다툼없음					40.00
	50	CAT WALK-3	63.00	63.00		다툼없음					63.00
	51	CAT WALK-4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2	MD-5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3	MD-6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4	MD-7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5	회이송관받침대	28,396.00	28,396.00		다툼없음					28,396.00
	56	케이블터널	481.00	481.00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57	케이블터널	214.00	214.00		다툼없음				상동	0.00
	58	케이블터널	1,089.00	1,089.00		다툼없음				상동	0.00
	59	케이블터널	1,797.00	1,797.00		다툼없음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청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0	케이블터널	1,130.00	1,130.00		다툼없음				상동	0.00
	61	BC-1A/B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341번 기재 1~6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62	BC-2A/B				다툼없음			상동		
	63	BC-3A/B				다툼없음			상동		
	64	BC-43A/B				다툼없음			상동		
	65	BC-42A/B				다툼없음			상동		
	66	BC-4A/B				다툼없음			상동		
	67	BC-8				다툼없음			상동		
	68	BC-9				다툼없음			상동		
	69	BC-22				다툼없음			상동		
	70	BC-23				다툼없음			상동		
	71	BC-12A/B				다툼없음			상동		
	72	BC-61				다툼없음			상동		
	73	BC-62				다툼없음			상동		
	74	BC-63				다툼없음			상동		
	75	BC-64				다툼없음			상동		
	76	BC-66A/B				다툼없음			상동		
	77	BC-11				다툼없음			상동		
	78	BC-51A/B				다툼없음			상동		
	79	BC-52A/B				다툼없음			상동		
	80	BC-53A/B				다툼없음			상동		
	81	BC-40A/B				다툼없음			상동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82	BC-36				다툼없음			상동		
	83	BC-37				다툼없음			상동		
	84	BC-33A/B				다툼없음			상동		
	85	BC-32A/B				다툼없음			상동		
	86	구조물(북부남쪽제방)	5,040.00		불특정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1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5,040.00
	87	구조물(북부등쪽제방)	14,25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2	상동. 다만 면적은 피고 제출 증거에 따라 6,256㎡(= 8m × 782m) 인정함.	6,256.00
	88	구조물(북부서쪽제방)	8,63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8,635.00
	89	구조물(남부서쪽제방)	4,99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4	상동	4,992.00
	90	구조물(남부등쪽제방)	5,836.7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5	상동	5,836.71
	91	저탄장	138,252.80		불특정	상동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를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빔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 을제83호증 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매립지 침하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철재 파이프를 바닥 면에 매설하여 만든 저탄장시설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38,252.8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92	남부회사장선착장	175.00		불특정	상동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p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93	북부회사장교량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교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40.00
	94	공업용수제방	1,650.00		불특정	상동		사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 을제83호증 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650.00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95	해안도로 (기력1,2호기)	24,0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 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4호증 1내지48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포장도로는 차량 운행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4,000.00
	96	주도로 (기력1,2호기)	8,5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560.00
	97	간선도로 (기력1,2호기)	22,4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2,400.00
	98	보조간선도로 (기력1,2호기)	2,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80.00
	99	주도로 (기력3,4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960.00
	100	간선도로 (기력3,4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80.00
	101	보조간선도로 (기력3,4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480.00
	102	주도로 (기력5,6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960.00
	103	간선도로 (기력5,6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80.00
	104	보조간선도로 (기력5,6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480.00
	105	내부도로 (복합 유수분리기 옆)	104.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4.00
	106	내부도로 (복합 터빈건물 뒤)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68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원인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07	내부도로 (복합 경유탱크 옆)	3,878.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878.00
	108	내부도로 (복합 1호기)	411.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11.60
	109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8,257.4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257.46
	110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421.8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21.84
	111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1,7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760.00
	112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2,8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880.00
	113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4,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000.00
	114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1,4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440.00
	115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2,3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320.00
	116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4,6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640.00
	117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5,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600.00
	118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3,1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120.00
	119	내부도로 (구본관앞~우회도로)	1,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60.00
	120	내부도로 (테니스장앞~횡단도로)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680.00
	121	내부도로 (종합창고뒤~횡단도로)	1,9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20.00
	122	내부도로 (종합창고~간선도로)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80.00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123	주차장 (기력발전소 교육원)	5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5호증 1내지23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포장된 주차장은 차량 주, 정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500.00
	124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00.00
	125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뒤)	1,575.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575.00
	126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00.00
	127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87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7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28	주차장 (기력발전소 식당앞)	3,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00.00
	129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옆)	1,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00.00
	130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앞)	2,7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700.00
	131	주차장 (기력1호기 변압기옆)	382.3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82.32
	132	주차장 (기력2호기옆)	94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946.00
	133	주차장 (기력3호기옆)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80.00
	134	주차장 (기력3호기변압기옆)	15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56.00
	135	주차장 (사일로앞)	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00.00
	136	주차장 (기력6호기옆)	1,477.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477.00
	137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875.9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75.96
	138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134.6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34.64
	139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355.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55.60
	140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256.8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56.80
	141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1,896.6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896.69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142	N2저장조관련 가스관	2.04	2.04		다툼없음					2.04
	143	가 스 관	504.51	504.51		다툼없음					504.51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144	복개시설(취수장다리)	1,293.18	1,293.18		다툼없음					1,293.18
	145	스팀배관맨홀	16.93	0.00	기과세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불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을제25증33: 현황사진 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46	우수맨홀	8.05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갑가제3호증의1내지3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 을제34호증6내지9 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 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적법 이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147	우수맨홀	7.50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갑가제3호증의3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을제31호증30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7.50
	148	우수배수로	13,655.65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영동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증복주장.	을제34호증1내지16 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을 제34호증의 1 기재 목록 중 소화관로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면적으로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13,655.65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149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2,637.00	2,637.00		다툼없음					2,637.00
	150	냉각수 배수관로	30.10	30.10		다툼없음					30.10
	151	STRUCTURE (배수관로 말단구조물)	327.58	327.58		다툼없음					327.58
	152	배수관로	3,351.92	3,351.92		다툼없음					3,351.92
	153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8,672.00	8,672.00		다툼없음					8,672.00
	154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01.45	301.45		다툼없음					301.45
	155	냉각수배수관로 (집수정포함)	8,254.53	8,254.53		다툼없음					8,254.53
	156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495.32	495.32		다툼없음					495.32
	157	배수암거	2,869.3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4호증 11내지12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58	배수로(저탄장 앞,뒤)	3,236.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4호증 13내지14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 (을제34호증 13: 1,694㎡, 을제34호증 14: 1,542.8㎡)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59	외곽배수로	47,7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7,720.00
	160	BOXCUIYERT	1,68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0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68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기재 원고 주장의 적법 일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61	배수로	1,948.1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26호증 93	옹벽11에 의해 형성된 배수로임. 다만, 피고가 이 목록 순번 24번(옹벽 11)에서 옹벽11 면적 304.92㎡를 포함한 배수로 전체 면적이 1,278.97㎡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차이 면적인 974.05㎡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한도에서 면적 인정함.	974.05
	162	HUME PIPE	118.9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1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8.92
	163	흄관	2,5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423p 을제83호증 1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520.00
	164	1~6호기 연돌면적	3,350.16	622.90	면적산출오류	피고의 면적산출이 잘못되었음. 피고는 5247.6㎡으로 과세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622.90㎡임 ※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 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 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3,350.16
	165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3,320.64	0.00	기과세, 비과세대상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 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 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1호증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을제27호증7내지11 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320.64
	166	예비변압기	224.00	0.00	비과세대상	1. 야적된 자재임.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9호증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을제31호증101 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24.00
	167	연소용공기유입구	761.76	0.00	비과세대상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5호증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업구름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을제31호증80 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61.7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여부 및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68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8,245.23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2005년부터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므로 2004년 귀속분 다툼과는 관련없음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 을제33호증55 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 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 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5,884.33
	169	기계장치	18.94	0.00	비과세대상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을제31호증36 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70	송풍구	2.85	0.00	기과세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2호증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171	취수장내기계장치	21.84	0.00	기과세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 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을제31호증6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172	HRSG	644.00	30.00	면적산출오류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 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6호증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644
	173	1,2호기 플라이애쉬 사일로백필터	116.92	0.00	기과세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 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67호증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95,96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116.92
	174	증기배출구	745.82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8호증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을제31호증99,100 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 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45.8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인정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5	환풍구	168.48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 을제31호증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28
	176	내부공기배출구	328.56	0.00	비과세대상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6,107,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28.56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177	취수펌프시설지역	1,392.93	1,392.93		다툼없음					1,392.93
	178	CWP STRUCTURE	960.00	960.00		다툼없음					960.00
	179	CWP크레인	392.70	392.70		다툼없음					392.70
	180	SLP크레인	896.04	896.04		다툼없음					896.04
	181	SLP크레인 레일	15.20	15.20		다툼없음					15.20
	182	CWP 크레인 레일	65.80	65.80		다툼없음					65.80
	183	복합연소용필터	39.25	39.25		다툼없음					39.25
	184	복합연돌	158.50	158.50		다툼없음					158.50
	185	복합주변압기	257.44	257.44		다툼없음					257.44
	186	복합 HRSGSUMP	33.00	33.00		다툼없음					33.00
	187	복합 GT7.8 변압기	37.72	37.72		다툼없음					37.72
	188	복합경유가압펌프	91.00	91.00		다툼없음					91.00
	189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69.00	69.00		다툼없음					69.00
	190	취수펌프시설	3,260.07	3,260.07		다툼없음					3,260.07
	191	CWP STRUCTURE	2,652.00	2,652.00		다툼없음					2,652.00
	192	석회석이송탑(TT01)	33.00	33.00		다툼없음					33.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입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계장치	193	석회석이송탑(TT02)	80.00	80.00		다툼없음					80.00
	194	석회석이송탑(TT03)	34.65	34.65		다툼없음					34.65
	195	석회석이송탑(TT04)	39.00	39.00		다툼없음					39.00
	196	석회석이송설비(LP01)	485.56	485.56		다툼없음					485.56
	197	석회석이송설비(LP02)	720.38	720.38		다툼없음					720.38
	198	석회석이송설비(LP03)	1,058.68	1,058.68		다툼없음					1,058.68
	199	석회석이송설비(LP04)	129.35	129.35		다툼없음					129.35
	200	해수가압펌프	72.00	72.00		다툼없음					72.00
	201	변압기	2,048.66	2,048.66		다툼없음					2,048.66
	202	기동변압기	261.66	261.66		다툼없음					261.66
	203	탈황기동변압기	7.79	7.79		다툼없음					7.79
	204	탈황보조변압기	1,884.90	1,884.90		다툼없음					1,884.90
	205	CWP 크레인 레일	90.47	90.47		다툼없음					90.47
	206	크레인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207	크레인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208	상탄기	672.00	672.00		다툼없음					672.00
	209	상탄기	448.00	448.00		다툼없음					448.00
	210	석탄하역기	1,250.00	1,250.00		다툼없음					1,250.00
	211	석탄하역기	1,136.00	1,136.00		다툼없음					1,136.00
	212	상탄기레일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213	상탄기레일	339.20	339.20		다툼없음					339.20
	214	석탄하역기레일	73.90	73.90		다툼없음					73.9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15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22,539.00	22,539.00		다툼없음					22,539.00
	216	고전압시설	177.1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1호증 81내지82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177.12
	217	가스장치	402.4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1내지8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02.48
	218	복합변압기	82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상동	825
	219	DUST COLLECTOR SYSTEM(24기)	5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상동	586.56
	220	기계장치 (플라이매쉬싸일로 위)	89.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96	이 목록 순번 17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221	수문	74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피고 증거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 32.2m×23m) 인정	740.6
	222	복합HRSG	3,19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196
	223	HP Drum	153.4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이 목록 순번 222번 기재 복합 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0
	224	IP Drum	6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상동	0
	225	LP Drum	62.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상동	0
	226	저장지역연료유펌프	1.4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44
	227	중유서비스연료유펌프	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적법 여부 및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28	First stage Mist Eliminnator	671.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29	Second stage Mist Eliminnator	1,007.2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상동	0
	230	Booster Fan Innet Danper	184.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상동	0
	231	Booster Fan Outlet Danper	255.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상동	0
	232	Energency Danper	130.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상동	0
	233	FGD Outlet Danper	141.1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상동	0
	234	가스히터	864.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상동	0
	235	여과수썸프	118.5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상동	0
	236	계량대	3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9
	237	전기집진기	10,37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이 목록 순번 449 내지 460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38	GIS(가스절연발전소)	1,20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204
	239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4,87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0	AIR PREHEATER INETDAMEER	2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41	Expansion Joint	30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2	오폐수처리장기계실	205.5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57호증 1내지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05.57
	243	Scr탈질설비구조물	4,7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상동	4,752.00
	244	정화조	28.69	0.00	비과세대상	1.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2.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이며, 피고는 자의적으로 정화조를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음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 사진 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 을제33호증59: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 사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8.69
	245	저장조	241.40	0.00	오류	피고가 2005년부터 과세한 건임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 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2004년에도 과세대상임	241.4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246	심층취수로	1,351.48	1,351.48		다툼없음					1,351.48
	247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549.89	549.89		다툼없음					549.89
	248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148.94	148.94		다툼없음					148.94
	249	취수장 옆 배수로	162.64	162.64		다툼없음					162.64
	250	취수로	2,585.80	2,585.80		다툼없음					2,585.80
	251	순수탱크	346.19	346.19		다툼없음					346.19
	252	복합 일상폐수조	401.98	401.98		다툼없음					401.98
	253	오수정화조	108.00	108.00		다툼없음					108.00
	254	복합 함유폐수조	163.40	163.40		다툼없음					163.40
	255	냉각수 배수관로 1	273.01	273.01		다툼없음					273.0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입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56	냉각수 배수관로 2	511.57	511.57		다툼없음					511.57
	257	냉각수 배수관로	409.05	409.05		다툼없음					409.05
	258	심층취수로입구 (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221.76	221.76		다툼없음					221.76
	259	심층취수관로 (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3,672.06	3,672.06		다툼없음					3,672.06
	260	취수장	5,081.23	5,081.23		다툼없음					5,081.23
	261	취수로	26,298.02	26,298.02		다툼없음					26,298.02
	262	취수로	3,060.74	3,060.74		다툼없음					3,060.74
	263	복수저장탱크	330.28	330.28		다툼없음					330.28
	264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307.72	307.72		다툼없음					307.72
	265	조절지 수조	304.00	304.00		다툼없음					304.00
	266	가압장 수조	317.00	317.00		다툼없음					317.00
	267	취수장 수조	50.00	50.00		다툼없음					50.00
	268	원수탱크B	2,147.20	2,147.20		다툼없음					2,147.20
	269	원수탱크D	6,358.50	6,358.50		다툼없음					6,358.50
	270	재활용수조	48.00	48.00		다툼없음					48.00
	271	염소저장조	14.12	14.12		다툼없음					14.12
	272	복합염산탱크	2.83	2.83		다툼없음					2.83
	273	염산저장탱크	33.46	33.46		다툼없음					33.46
	274	가성소다저장탱크	80.44	80.44		다툼없음					80.44
	275	저회저장조	157.00	157.00		다툼없음					157.00
	276	비회저장조	562.80	562.80		다툼없음					562.80
	277	석고탈수탱크	54.00	54.00		다툼없음					54.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저장조및수조	278	석회석일일저장조	28.00	28.00		다툼없음					28.00
	279	석회석슬러리탱크	46.50	46.50		다툼없음					46.50
	280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81	탈황비상저장탱크	165.00	165.00		다툼없음					165.00
	282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83	염기저장조	9.00	9.00		다툼없음					9.00
	284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5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6	수조	1,164.3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 을제76호증6 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64.38
	287	저장조	1,475.6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 38-39).	772.29
	288	펌프실(2-1)(2-2)	30.2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16~17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0.21
	289	기력 LOSERVICE TANK	276.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47	상동	276.32
	290	CPI유수분리기	48.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0	상동	48.76
	291	콘크리트구조물	13.8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5	이 목록 순번 168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292	원수탱크D(2기중 미과세1기)	6,358.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3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0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복 산정 여부 알 수 없음.	0.00
	293	복합유수분리기	309.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적법 입법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94	복합오폐수집수지	397.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95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2,64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222,223,304p 을제83호증 3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640.50
	296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40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406p 을제83호증 34	상동	400
	297	경유저장탱크	53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 을제83호증 35	상동	530.66
	298	원수저장탱크	2,098.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 을제83호증 36	상동	2,098.08
	299	1차침전조	1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00	1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1	2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2	3차반응탱크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3	1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4	1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5	2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6	2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7	2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8	3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9	1차처리수조	62.7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10	압력여과기	3.79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1	활성탄여과기	12.56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2	1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3	2차PH처리수조	4.95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4	불소흡착탑	6.28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5	2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6	방류수조	66.0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7	농축조	42.25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8	슬러지저장조	12.0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19	케이크호퍼	9.0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0	세척수탱크	1.76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1	황산알루미늄호퍼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2	탄산나트륨호퍼	2.54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3	용해주입탱크	5.3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4	호퍼공기저장탱크	0.8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325	용해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울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울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기재			피고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26	길레이트주입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7	폴리머용해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8	폴리머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9	염산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0	염산가스실포트	0.1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1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3.1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2	차아염산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3	아황산용해탱크	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4	MXINGTANK	4.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112p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35	취수펌프장	37.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3p 을제83호증 3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7.50
	336	용수저장탱크	1,017.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4p 을제83호증 38	상동	1,017.36
저유조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337	복합 DO Storage tank	1,118.10	1,118.10		다툼없음					1,118.10
	338	Clean&Dirty Oil tank	20.50	20.50		다툼없음					20.50
	339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88.20	88.20		다툼없음					88.20
	340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88.00	88.00		다툼없음					88.0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공작물	341	7,8호기 컨베이어설비	34,155.78	0.00	비과세대상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 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 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 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 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2007-427)	1. 7,8호기 컨베이어설비 10,485.2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 23,670.56㎡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이므로 포함하되, 다만 을제24호증의 2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하단컨베이어 설비 등은 같은 지점의 상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설비와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341-1)' 기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공제하고, 또한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341-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추가 공제한 면적인 21,346.98㎡만 인정함	21,346.98		
	342	급수탱크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	2,944.14	0.00	기과세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을제32호증6내지18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2,944.14		1
	다름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343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2,076.80	2,076.80		다름없음					2,076.80		
	344	취수관로	902.00	902.00		다름없음					902.00		
	345	SCW PIPE	256.00	256.00		다름없음					256.00		
	346	급수탱크관련송수관	691.75	691.75		다름없음					691.75		
	347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19.18	19.18		다름없음					19.18		
	348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835.00	835.00		다름없음					835.00		
	349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298.20	298.20		다름없음					298.2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적법 인법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수관	350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1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2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1.00	31.00		다툼없음					31.00
	353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389.00	389.00		다툼없음					389.00
	354	취수장옆 HUME PIPE	2.57	2.57		다툼없음					2.57
	355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1,106.09	1,106.09		다툼없음					1,106.09
	356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768.00	768.00		다툼없음					768.00
	357	CWP PIPE(CWP~보일러건물)	3,840.00	3,840.00		다툼없음					3,840.00
	358	수처리 건물 관련	2.04	2.04		다툼없음					2.04
	359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0.39	0.39		다툼없음					0.39
	360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15,750.00	15,750.00		다툼없음					15,750.00
	361	옥외소화관	2,932.8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을제61호증 1내지 11 1~2호기건설지 599p,복합 건설지 392p 을제83호증 3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932.88
	362	공업용수도수관	150.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224p 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3	공업용수유공관	143.0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1283p 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상동	0.00
	364	재순환수관	2,847.2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311p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 을제83호증 4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65	전처리배관(강관,PEM 수도관)	1,08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783p 을제83호증 41	상동	0.00
	366	애쉬라인	4,3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 을제83호증 42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다만 면적은 1,440㎡(= 0.3m×2,400m×2)	1,440.00
	367	폐수배관	13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8	회이송관	1,857.1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 을제83호증 4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857.17
	369	섬프펌프관	1.2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6p 을제83호증 44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0	송수관 (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1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1	경유배관	792.00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갑가 제80호증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을제32호증2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72	1부두경유배관	4.95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을제32호증3B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73	도관(회이송관)	3,486.88	0.00	기과세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갑가제3호증의3 16면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을제32호증53내지57 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상 회이송관은 그보다 넓은 수평투영면적 을 가진 회이송관받침대(순번 55)와 별도로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0.00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374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9.00	9.00		다툼없음					9.00
	375	경유저장탱크송유관	3.50	3.50		다툼없음					3.5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유관 및 도관	376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77	연료공급실송유관	41.20	41.20		다툼없음					41.20
	378	오일탱크관련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79	LO SERVICE PUMP TO BOILER	24.36	24.36		다툼없음					24.36
	380	LO SERVICE PUMP TO BOILER	3.57	3.57		다툼없음					3.57
	381	LO SERVICE PUMP TO BOILER	0.59	0.59		다툼없음					0.59
	382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2.03	2.03		다툼없음					2.03
	383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2.00	2.00		다툼없음					2.00
	384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38.58	38.58		다툼없음					38.58
	385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60	1.60		다툼없음					1.60
	386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38.56	138.56		다툼없음					138.56
	387	LO SERVICE PUMP TO BOILER	59.78	59.78		다툼없음					59.78
	388	LO SERVICE PUMP TO BOILER	45.57	45.57		다툼없음					45.57
	389	도관시설	13,905.19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이 목록 순번 제27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13,893.69
	390	중유이송배관	77.83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806p *2013년 폐기시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391	건설 사우소	479.24	479.24		다툼없음					479.2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첨부 원법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92	기상관측소	7.29	7.29		다툼없음					7.29
	393	모의제어반	1,569.86	1,569.86		다툼없음					1,569.86
	394	무기고	66.96	66.96		다툼없음					66.96
	395	소각로	259.18	259.18		다툼없음					259.18
	396	온실	72.00	72.00		다툼없음					72.00
	397	이륜차고	135.00	135.00		다툼없음					135.00
	398	종합사무실	7,486.62	7,486.62		다툼없음					7,486.62
	399	종합사무실-건설소	3,291.08	3,291.08		다툼없음					3,291.08
	400	차고	318.00	318.00		다툼없음					318.00
	401	홍보관	340.20	340.20		다툼없음					340.20
	402	홍보관 화장실	57.40	57.40		다툼없음					57.40
	403	#1 외부화장실-2호기위	7.28	7.28		다툼없음					7.28
	404	배양장	562.50	562.50		다툼없음					562.50
	405	(종묘)배양장창고	96.00	96.00		다툼없음					96.00
	406	온배수양식동	504.00	504.00		다툼없음					504.00
	407	온배수양식장펌프실	21.60	21.60		다툼없음					21.60
	408	웅천 가압장	162.00	162.00		다툼없음					162.00
	409	웅천 사택	43.65	43.65		다툼없음					43.65
	410	주산 사택	55.72	55.72		다툼없음					55.7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입증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11	주산 취수장	161.00	161.00		다툼없음					161.00
	412	경비실(구정문수위실)	100.23	100.23		다툼없음					100.23
	413	정문경비실	64.04	64.04		다툼없음					64.04
	414	후문경비실	54.98	54.98		다툼없음					54.98
	415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6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7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8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9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0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1	망루1형	12.35	12.35		다툼없음					12.35
	422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423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424	초소2형(망루)	18.83	18.83		다툼없음					18.83
	425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6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7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8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9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기재			피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30	간이초소 NO-1	5.76	5.76		다툼없음					5.76
	431	간이초소 NO-2	5.76	5.76		다툼없음					5.76
	432	간이초소 NO-3	5.76	5.76		다툼없음					5.76
	433	간이초소 NO-4	5.76	5.76		다툼없음					5.76
	434	벙커	7.20	7.20		다툼없음					7.20
	435	#1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436	#2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437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27,055.48	27,055.48		다툼없음					27,055.48
	438	#5,6 터빈및주제어건물	26,096.71	26,096.71		다툼없음					26,096.71
	439	#1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40	#2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41	#3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2	#4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3	#5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4	#6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5	#1 보조보일러제어실	212.15	212.15		다툼없음					212.15
	446	#2 보조보일러전원실	102.48	102.48		다툼없음					102.48
	447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448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49	#1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0	#2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1	#3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2	#4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3	#3 집진기 NO-1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4	#3 집진기 NO-2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5	#4 집진기 NO-3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6	#4 집진기 NO-4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7	#5 집진기 NO-5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8	#5 집진기 NO-6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9	#6 집진기 NO-7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0	#6 집진기 NO-8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1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72.00	72.00		다툼없음					72.00
	462	#1,2 물처리실	1,260.80	1,260.80		다툼없음					1,260.80
	463	#3~4 물처리건물	2,992.62	2,992.62		다툼없음					2,992.62
	464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18.56	18.56		다툼없음					18.56
	465	산소저장창고	35.00	35.00		다툼없음					35.00
	466	(산업폐기물)저장창고	141.12	141.12		다툼없음					141.12
	467	#1,2 샤워장	395.18	395.18		다툼없음					395.1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68	염소주입실	622.16	622.16		다툼없음					622.16
	469	#1,2 유지창고	350.00	350.00		다툼없음					350.00
	470	정비고	611.00	611.00		다툼없음					611.00
	471	#1,2 종합창고	3,706.20	3,706.20		다툼없음					3,706.20
	472	#3,4 종합창고	3,706.20	3,706.20		다툼없음					3,706.20
	473	폐기물저장창고	230.67	230.67		다툼없음					230.67
	474	폐수처리관리실	206.36	206.36		다툼없음					206.36
	475	폐수처리건물	546.83	546.83		다툼없음					546.83
	476	부두접안정보실	15.12	15.12		다툼없음					15.12
	477	#1 비최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78	#2 비최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79	#1 사일로 전원실	52.00	52.00		다툼없음					52.00
	480	상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481	저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482	석탄분쇄실 1	802.75	802.75		다툼없음					802.75
	483	석탄분쇄실 2	814.00	814.00		다툼없음					814.00
	484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55.50	55.50		다툼없음					55.50
	485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11.00	11.00		다툼없음					11.00
	486	석탄하역건물	135.00	135.00		다툼없음					135.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건축물	487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45.00	45.00		다툼없음					45.00
	488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5.30	5.30		다툼없음					5.30
	489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7.93	7.93		다툼없음					7.93
	490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7.15	7.15		다툼없음					7.15
	491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6.37	6.37		다툼없음					6.37
	492	유연탄하역조정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493	유연탄작업관리실	694.02	694.02		다툼없음					694.02
	494	입하탄시료채취실	287.10	287.10		다툼없음					287.10
	495	회처리전원실	67.51	67.51		다툼없음					67.51
	496	조탄실 1	140.00	140.00		다툼없음					140.00
	497	조탄실 2	301.75	301.75		다툼없음					301.75
	498	조탄실 3	414.40	414.40		다툼없음					414.40
	499	조탄실 4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500	조탄실 5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01	조탄실 6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02	조탄실 NO-1	257.57	257.57		다툼없음					257.57
	503	조탄실 NO-2	256.26	256.26		다툼없음					256.26
	504	조탄실 NO-3	269.68	269.68		다툼없음					269.68
	505	조탄실 NO-4	85.08	85.08		다툼없음					85.0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06	조탄실 NO-5	85.85	85.85		다툼없음					85.85
	507	조탄실 N0-6	127.07	127.07		다툼없음					127.07
	508	조탄실 N0-7	1,143.42	1,143.42		다툼없음					1,143.42
	509	조틴실 N0-8	1,598.88	1,598.88		다툼없음					1,598.88
	510	조탄실 N0-9	398.23	398.23		다툼없음					398.23
	511	조탄실 N0-10	116.80	116.80		다툼없음					116.80
	512	조탄실	147.11	147.11		다툼없음					147.11
	513	조탄실	253.52	253.52		다툼없음					253.52
	514	트랜스퍼타워 18	217.18	217.18		다툼없음					217.18
	515	트랜스퍼타워 19	224.71	224.71		다툼없음					224.71
	516	트랜스퍼타워 20	1,323.18	1,323.18		다툼없음					1,323.18
	517	트랜스퍼타워 21	226.19	226.19		다툼없음					226.19
	518	회처리펌프제어실	23.80	23.80		다툼없음					23.80
	519	회처리순환펌프실	95.20	95.20		다툼없음					95.20
	520	회처리순환펌프실	408.00	408.00		다툼없음					408.00
	521	소화수및원수펌프실	380.25	380.25		다툼없음					380.25
	522	순환수보조펌프실	299.75	299.75		다툼없음					299.75
	523	송유및소화수펌프실	383.00	383.00		다툼없음					383.00
	524	해수소화펌프실	25.39	25.39		다툼없음					25.3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25	해수인양펌프조작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526	유류가압펌프실	336.00	336.00		다툼없음					336.00
	527	연료유펌프실-#1,2호기	654.72	654.72		다툼없음					654.72
	528	연료유공급펌프실	645.00	645.00		다툼없음					645.00
	529	#3,4연료조질펌프실	44.84	44.84		다툼없음					44.84
	530	#5,6연료조질펌프실	44.84	44.84		다툼없음					44.84
	531	가스창고-#2호기옆	24.00	24.00		다툼없음					24.00
	532	가스창고-2화학부옆	5.76	5.76		다툼없음					5.76
	533	가스창고-2화학부옆	7.92	7.92		다툼없음					7.92
	534	가스창고-고압	150.00	150.00		다툼없음					150.00
	535	질소가스저장실	34.76	34.76		다툼없음					34.76
	536	#3,4 질소가스저장실	74.00	74.00		다툼없음					74.00
	537	분석실가스저장고	17.64	17.64		다툼없음					17.64
	538	#3 서비스가스창고-1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39	#4 서비스가스창고-2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0	#5 서비스가스창고-3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1	#6 서비스가스창고-4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2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1,152.00	1,152.00		다툼없음					1,152.00
	543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2,072.90	2,072.90		다툼없음					2,072.9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입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44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155.15	155.15		다툼없음					155.15
	545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1,440.00	1,440.00		다툼없음					1,440.00
	546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512.00	512.00		다툼없음					512.00
	547	탈황설비 주제어동	2,303.67	2,303.67		다툼없음					2,303.67
	548	탈환설비 주제어동	2,538.00	2,538.00		다툼없음					2,538.00
	549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1,575.23	1,575.23		다툼없음					1,575.23
	550	탈황설비 티티(TT)-01	107.39	107.39		다툼없음					107.39
	551	탈황설비 티티(TT)-02	313.57	313.57		다툼없음					313.57
	552	탈황설비 티티(TT)-03	156.81	156.81		다툼없음					156.81
	553	탈황설비 티티(TT)-04	417.29	417.29		다툼없음					417.29
	554	탈황설비 티티티(TTT)-01	595.92	595.92		다툼없음					595.92
	555	탈황설비 엘브이(LV)-02	145.54	145.54		다툼없음					145.54
	556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57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58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59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60	복합 주제어건물-1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561	복합 주제어건물-2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562	복합 #1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63	복합 #2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64	복합 #3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565	복합 #4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566	복합 #5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567	복합 #6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568	복합 #7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69	복합 #8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70	복합 #1 스팀터빈-1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571	복합 #2 스팀터빈-1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572	복합 #3 스팀터빈-2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573	복합 #4 스팀터빈-2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574	복합 #1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5	복합 #2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6	복합 #3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7	복합 #4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8	복합 #5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9	복합 #6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0	복합 #7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1	복합 #8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법 입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82	복합 공기압축기실및 비상발전기실	245.58	245.58		다툼없음					245.58
	583	복합 종합창고	3,534.84	3,534.84		다툼없음					3,534.84
	584	복합 유지창고	365.06	365.06		다툼없음					365.06
	585	복합 염소주입실	252.58	252.58		다툼없음					252.58
	586	복합 급수펌프실	76.78	76.78		다툼없음					76.78
	587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92.81	92.81		다툼없음					92.81
	588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204.52	204.52		다툼없음					204.52
	589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173.07	173.07		다툼없음					173.07
	590	복합 #1,2 질소가스창고-1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1	복합 #3,4 질소가스창고-2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2	복합 #5,6 질소가스창고-3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3	복합 #7,8 질소가스창고-4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4	복합경비실	57.86	57.86		다툼없음					57.86
	595	복합 망루-1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6	복합 망루-2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7	복합 망루-3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8	복합 망루-4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9	복합 망루-5	12.99	12.99		다툼없음					12.99
	600	콘테이너	36.00	36.00		다툼없음					36.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기재	원고 주장의 청본 원법 사용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01	탈황 #3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02	탈황 #3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03	탈황 #4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04	탈황 #4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05	탈황 #5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06	탈황 #5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07	탈황 #6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08	탈황 #6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09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17.50	17.50		다툼없음					17.50
	610	방카	7.20	7.20		다툼없음					7.20
	611	분진측정실	32.00	32.00		다툼없음					32.00
	612	망루	7.90	7.90		다툼없음					7.90
	613	경비실	10.00	10.00		다툼없음					10.00
	614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132.19	132.19		다툼없음					132.19
	615	기타건물	5,777.66		붙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18호증 1내지3 을제36호증 1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경비실 351.25㎡(을제18호증1)는 2005년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컨테이너동(을제18호증2) 중 순번 25, 26 기재 건물 84.96㎡ 은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5,341.45
합계			3,783,360.34	471,826.48	-	-	-	-	-		1,099,535.9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1-1)

전해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BC12AB하단(B,C)	124.16	89.6	7 *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1-2)

컨베이어설비명	피고 면적	오류 내용	인정 면적	차이
BC43A/B의 A	1,142.10	수평투영 오류	1,057.50	84.6
BC4A/B	827.51	상동	788.5	39.01
BC22	397.59	상동	365.6	31.99
BC23	391.5	상동	360	31.5
BC12A/B의 A	2,071.30	상동	1,770.23	301.07
BC61	531.81	상동	467.4	64.41
BC62	330.72	상동	300.3	30.42
BC63	396.4	상동	328	68.4
BC64 컨베이어	402.3	상동	346.5	55.8
BC66A/B	598.98	상동	475.7	123.28
BC53A/B의 C	988.22	상동	904.62	83.6
BC40A/B의 A	2,302.30	상동	1,995	307.3
BC33A/B	973.44	합계 오류	802.42	171.02
BC32A/B	775.96	합계 오류	664.48	111.48
			합계	1503.8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별지3 2(상 연번적 전정료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	석회석부두	2,573.00	0.00	비과세대상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 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7호증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 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선박에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항만시설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573.00
	2	물양장	6,558.00	0.00	비과세대상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 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하역한 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야적장으로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6,558.00
	3	호 안	6,460.00	0.00	비과세대상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엎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 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사업장 시설을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6,460.00
	4	케이블터널	38,697.36	7,346.57	면적산출 오류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 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 공문(갑가제25호증)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 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 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 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 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 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면적을 인정함.	38,697.36
	5	케이블보호철판	1.50	0.00	비과세대상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 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이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 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정착 구조물로 보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	EDB 맨홀	2.56	0.00	기과세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 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35,36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7	케이블 트레이	11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을제25호증37	상동	0.00
	8	EDB 맨홀	26.94	0.00	기과세	1. 기력 1~6호기 캐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케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케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케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101내지 103 을제25호증128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상동	0.00
	9	케이블시설	0.70	0.00	면적중복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 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갑가제3호증 1내지3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104 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0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	1,487.62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37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1	케이블 터널 345kV	0.00	898.36	면적산출오류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0
	12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858.0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15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3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433.2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1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208,209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4	CWP 케이블 트레이	3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8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5	옹벽 1,2,3 등	19,173.62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엮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 을제26호증116내지119, 을제26호증27내지129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면적 정정	사업장 시설이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담, 경계,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9,173.6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6	옹벽24	1,040.0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영보리 741)	갑가 제57호증, 갑가 제58호증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 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을제26호증106 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 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17	옹벽25-27	3,194.12	0.00	비과세대상	비탄방지펜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 을제26호증107,108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외부 유출과 저탄장으로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담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3,194.12		
	18	옹벽28-30	7,233.4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비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109내지111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19	옹벽 31,32	13,185.00	0.00	비과세대상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 을제26호증112,113	이 목록 순번 3번 기재 호안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로, 원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을 제1호증의2),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함.	13,185.00		
	20	옹벽34-1,34-2,54~56	8,290.65	0.00	비과세대상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 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저탄장 침전조를 만들기 위해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8,290.65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1	옹벽57,58	1,581.2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을제26호증131 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상동	1,581.20		
	22	옹벽59~62	3,152.4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처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을제26호증132 을제26호증133	상동	3,152.40		
	23	옹벽63	27,280.00	0.00	비과세대상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갑가 제57,58호증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 ※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을제26호증134 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 을제47호증2: 수문출입구사진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24	옹벽11	304.92	0.00	비과세대상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갑가제3호증의3 1면, 갑가제3호증의2 1면 갑가제3호증의3 5면	폭 30.2m, 길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 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을제26호증93 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이 면적에는 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304.92		
	25	옹벽17	23.46	0.00	기과세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을제26호증98 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사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옹벽에 해당하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케이블터널 시설과 별도로 시공한 시설물로 보임.	23.46		
	26	옹벽64~66	3,570.00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1.8m와 4.4m 및 1.5m로 기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 임.	을제26호증135,136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우수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3,570.00		
	27	2부두Air라인	11.50	11.50		다툼 없음							11.5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8	스팀관	150.00	150.00		다툼없음.			을제32호증67,68		150.00
	29	스팀관	819.00	819.00		다툼없음.			을제32호증23,24		819.00
	30	법면	57,140.00	0.00	비과세대상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갑가제72호증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흄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원고 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 을제37호증5,6: 시설물시설내역 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흄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법면 지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흄관, 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57,140.00
	31	CWP 옆 구조물	6,045.20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 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처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을제26호증1~137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면적 정정	시설물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타설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므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서 연면적에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계장치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을제15호증의 순번 17-19, 을제26호증의1)	6,045.20
	32	POND(연못)	21,575.25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동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 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입증 완료함)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26호증129내지133 을제34호증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는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0두1744 판결), POND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저탄장 침전 시설로서 그 바닥 면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3	공업용수저수지	115,153.00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포리 720잡).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74호증1내지3	원고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0.00
	33	남부회처리장	1,360,36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을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75호증	원고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바닥 면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4	북부회처리장	1,072,59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상동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35	케이블 터널 154kV	336.14	336.14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36	항만시설(1부두) MT DOCK	7,242.00	7,242.00		다툼없음					7,242.00
	37	ACESS ROAD	1,322.00	1,322.00		다툼없음					1,322.00
	38	CAT WALK-1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39	CAT WALK-2	78.00	78.00		다툼없음					78.00
	40	CAT WALK-3	40.00	40.00		다툼없음					40.00
	41	CAT WALK-4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42	MD-1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3	MD-2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4	MD-3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45	MD-4	100.00	100.00		다툼없음					10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 시설	46	항만시설(2부두) MT DOCK	7,574.00	7,574.00		다툼없음						7,574.00	
	47	ACESS ROAD	1,206.00	1,206.00		다툼없음						1,206.00	
	48	CAT WALK-1	136.00	136.00		다툼없음						136.00	
	49	CAT WALK-2	40.00	40.00		다툼없음						40.00	
	50	CAT WALK-3	63.00	63.00		다툼없음						63.00	
	51	CAT WALK-4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2	MD-5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3	MD-6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4	MD-7	200.00	200.00		다툼없음						200.00	
	55	회아송관받침대	28,396.00	28,396.00		다툼없음						28,396.00	
	56	케이블터널	481.00	481.00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57	케이블터널	214.00	214.00		다툼없음				상동		0.00	
	58	케이블터널	1,089.00	1,089.00		다툼없음				상동		0.00	
	59	케이블터널	1,797.00	1,797.00		다툼없음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0	케이블터널	1,130.00	1,130.00		다툼없음					상동	0.00
	61	BC-1A/B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342번 기재 7, 8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62	BC-2A/B				다툼없음				상동		
	63	BC-3A/B				다툼없음				상동		
	64	BC-43A/B				다툼없음				상동		
	65	BC-42A/B				다툼없음				상동		
	66	BC-4A/B				다툼없음				상동		
	67	BC-8				다툼없음				상동		
	68	BC-9				다툼없음				상동		
	69	BC-22				다툼없음				상동		
	70	BC-23				다툼없음				상동		
	71	BC-12A/B				다툼없음				상동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72	BC-61				다툼없음			상동			
	73	BC-62				다툼없음			상동			
	74	BC-63				다툼없음			상동			
	75	BC-64				다툼없음			상동			
	76	BC-66A/B				다툼없음			상동			
	77	BC-11				다툼없음			상동			
	78	BC-51A/B				다툼없음			상동			
	79	BC-52A/B				다툼없음			상동			
	80	BC-53A/B				다툼없음			상동			
	81	BC-40A/B				다툼없음			상동			
	82	BC-36				다툼없음			상동			
	83	BC-37				다툼없음			상동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84	BC-33A/B				다툼없음			상동				
	85	BC-32A/B				다툼없음			상동				
	86	구조물(북부남쪽제방)	5,040.00		불특정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1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5,040.00		
	87	구조물(북부동쪽제방)	14,25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2	상동. 다만 면적은 피고 제출 증거에 따라 6,256㎡(= 8m × 782m) 인정함.	6,256.00		
	88	구조물(북부서쪽제방)	8,63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8,635.00		
	89	구조물(남부서쪽제방)	4,99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4	상동	4,992.00		
	90	구조물(남부동쪽제방)	5,836.7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5	상동	5,836.71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91	저탄장	138,252.80		불특정	상동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를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 빔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 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 을제83호증 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매립지 침하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철재 파이프를 바닥 면에 매설하여 만든 저탄장시설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38,252.80
	92	남부회사장선착장	175.00		불특정	상동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p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93	북부회사장교량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교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40.00
	94	공업용수재방	1,650.00		불특정	상동		사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 을제83호증 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1,650.00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95	해안도로 (기력1,2호기)	24,0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4호증 1내지48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포장도로는 차량 운행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24,000.00
	96	주도로 (기력1,2호기)	8,5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560.00
	97	간선도로 (기력1,2호기)	22,4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2,400.00
	98	보조간선도로 (기력1,2호기)	2,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80.00
	99	주도로 (기력3,4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960.00
	100	간선도로 (기력3,4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80.00
	101	보조간선도로 (기력3,4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480.00
	102	주도로 (기력5,6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960.00
	103	간선도로 (기력5,6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80.00
	104	보조간선도로 (기력5,6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480.00
	105	내부도로 (복합 유수분리기 옆)	104.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4.00
	106	내부도로 (복합 터빈건물 뒤)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680.00
	107	내부도로 (복합 경유탱크 옆)	3,878.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878.00
	108	내부도로 (복합 1호기)	411.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11.6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09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8,257.4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257.46
	110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421.8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21.84
	111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1,7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760.00
	112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2,8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880.00
	113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4,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000.00
	114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1,4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440.00
	115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2,3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320.00
	116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4,6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640.00
	117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5,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600.00
	118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3,1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120.00
	119	내부도로 (구본관앞~우회도로)	1,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60.00
	120	내부도로 (테니스장앞~횡단도로)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680.00
	121	내부도로 (종합창고뒤~횡단도로)	1,9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20.00
	122	내부도로 (종합창고~간선도로)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80.00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23	주차장 (기력발전소 교육원)	5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설무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5호증 1내지23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포장된 주차장은 차량 주, 정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500.00
	124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00.00
	125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뒤)	1,575.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575.00
	126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00.00
	127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87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70.00
	128	주차장 (기력발전소 식당앞)	3,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00.00
	129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옆)	1,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00.00
	130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앞)	2,7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700.00
	131	주차장 (기력1호기 변압기옆)	382.3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82.32
	132	주차장 (기력2호기옆)	94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946.00
	133	주차장 (기력3호기옆)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80.00
	134	주차장 (기력3호기변압기옆)	15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56.00
	135	주차장 (사일로앞)	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00.00
	136	주차장 (기력6호기옆)	1,477.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477.0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37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875.9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75.96
	138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134.6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34.64
	139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355.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55.60
	140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256.8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56.80
	141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1,896.6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896.69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142	N2저장조관련 가스관	2.04	2.04		다툼없음					2.04
	143	가 스 관	504.51	504.51		다툼없음					504.51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144	복개시설(취수장다리)	1,293.18	1,293.18		다툼없음					1,293.18
	145	스팀배관맨홀	16.93	0.00	기과세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을제25증33: 현황사진 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46	우수맨홀	8.05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갑가제3호증의1내지3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 을제34호증6내지9 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 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0.00
	147	우수맨홀	7.50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을제31호증30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7.5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148	우수배수로	13,655.65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중복주장.	을제34호증1내지16 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을 제34호증의 1 기재 목록 중 소화관로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면적으로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13,655.65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149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2,637.00	2,637.00		다툼없음							2,637.00
	150	냉각수 배수관로	30.10	30.10		다툼없음							30.10
	151	STRUCTURE (배수관로 말단구조물)	327.58	327.58		다툼없음							327.58
	152	배수관로	3,351.92	3,351.92		다툼없음							3,351.92
	153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8,672.00	8,672.00		다툼없음							8,672.00
	154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01.45	301.45		다툼없음							301.45
	155	냉각수배수관로 (집수정포함)	8,254.53	8,254.53		다툼없음							8,254.53
	156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495.32	495.32		다툼없음							495.32
	157	배수암거	2,869.3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4호증 11내지12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58	배수로(저탄장 앞,뒤)	3,236.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4호증 13내지14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에서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을제34호증 13: 1,694㎡, 을제34호증 14: 1,542.8㎡)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59	외곽배수로	47,7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7,720.00
	160	BOXCUIYERT	1,68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0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680.00
	161	배수로	1,948.1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26호증 93	옹벽11에 의해 형성된 배수로임. 다만, 피고가 이 목록 순번 24번(옹벽11)에서 옹벽11 면적 304.92㎡를 포함한 배수로 전체 면적이 1,278.97㎡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차이 면적인 974.05㎡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한도에서 면적 인정함.	974.05
	162	HUME PIPE	118.9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1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8.92
	163	흄관	2,5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423p 을제83호증 1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520.00
	164	1~6호기 연돌면적	3,350.16	622.90	면적산출오류	피고의 면적산출이 잘못되었음. 피고는 5247.6㎡으로 과세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622.90㎡임 ※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 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 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 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 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3,350.16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65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3,320.64	0.00	기과세, 비과세대상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 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 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1호증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을제27호증7내지11 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320.64		
	166	예비변압기	224.00	0.00	비과세대상	1. 야적된 자재임.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9호증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을제31호증101 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24.00		
	167	연소용공기유입구	761.76	0.00	비과세대상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5호증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을제31호증80 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61.76		
	168	유인통풍기 콘크리트구조물	8,245.23	0.00	특정필요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통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 을제33호증55 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 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 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5,884.33		
	169	기계장치	18.94	0.00	비과세대상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 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을제31호증36 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0	송풍구	2.85	0.00	기과세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2호증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171	취수장내기계장치	21.84	0.00	기과세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 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을제31호증6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172	HRSG	644.00	30.00	면적산출오류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 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6호증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644
	173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백필터	116.92	0.00	기과세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 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67호증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95,96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116.92
	174	증기배출구	745.82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8호증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 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을제31호증99,100 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 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45.82
	175	환풍구	168.48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 을제31호증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2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6	내부공기배출구	328.56	0.00	비과세대상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6,107,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28.56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177	취수펌프시설지역	1,392.93	1,392.93		다툼없음							1,392.93
	178	CWP STRUCTURE	960.00	960.00		다툼없음							960.00
	179	CWP크레인	392.70	392.70		다툼없음							392.70
	180	SLP크레인	896.04	896.04		다툼없음							896.04
	181	SLP크레인 레일	15.20	15.20		다툼없음							15.20
	182	CWP 크레인 레일	65.80	65.80		다툼없음							65.80
	183	복합연소용필터	39.25	39.25		다툼없음							39.25
	184	복합연돌	158.50	158.50		다툼없음							158.50
	185	복합주변압기	257.44	257.44		다툼없음							257.44
	186	복합 HRSGSUMP	33.00	33.00		다툼없음							33.00
	187	복합 GT7.8 변압기	37.72	37.72		다툼없음							37.72
	188	복합경유가압펌프	91.00	91.00		다툼없음							91.00
	189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69.00	69.00		다툼없음							69.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계장치	190	취수펌프시설	3,260.07	3,260.07		다툼없음					3,260.07
	191	CWP STRUCTURE	2,652.00	2,652.00		다툼없음					2,652.00
	192	석회석이송탑(TT01)	33.00	33.00		다툼없음					33.00
	193	석회석이송탑(TT02)	80.00	80.00		다툼없음					80.00
	194	석회석이송탑(TT03)	34.65	34.65		다툼없음					34.65
	195	석회석이송탑(TT04)	39.00	39.00		다툼없음					39.00
	196	석회석이송설비(LP01)	485.56	485.56		다툼없음					485.56
	197	석회석이송설비(LP02)	720.38	720.38		다툼없음					720.38
	198	석회석이송설비(LP03)	1,058.68	1,058.68		다툼없음					1,058.68
	199	석회석이송설비(LP04)	129.35	129.35		다툼없음					129.35
	200	해수가압펌프	72.00	72.00		다툼없음					72.00
	201	변압기	2,048.66	2,048.66		다툼없음					2,048.66
	202	기동변압기	261.66	261.66		다툼없음					261.66
	203	탈황기동변압기	7.79	7.79		다툼없음					7.79
	204	탈황보조변압기	1,884.90	1,884.90		다툼없음					1,884.90
	205	CWP 크레인 레일	90.47	90.47		다툼없음					90.47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06	크레인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207	크레인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208	상탄기	672.00	672.00		다툼없음							672.00
	209	상탄기	448.00	448.00		다툼없음							448.00
	210	석탄하역기	1,250.00	1,250.00		다툼없음							1,250.00
	211	석탄하역기	1,136.00	1,136.00		다툼없음							1,136.00
	212	상탄기레일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213	상탄기레일	339.20	339.20		다툼없음							339.20
	214	석탄하역기레일	73.90	73.90		다툼없음							73.90
	215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22,539.00	22,539.00		다툼없음							22,539.00
	216	고전압시설	177.1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1호증 81내지82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177.12	
	217	가스장치	402.4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1내지8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02.48
	218	복합변압기	82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상동		825
	219	DUST COLLECTOR SYSTEM(24기)	5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상동		586.5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20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89.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96	이 목록 순번 17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221	수문	74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피고 증거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 32.2m×23m) 인정	740.6		
	222	복합HRSG	3,19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 14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196		
	223	HP Drum	153.4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 15	이 목록 순번 222번 기재 복합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0		
	224	IP Drum	6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 16	상동	0		
	225	LP Drum	62.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상동	0		
	226	저장지역연료유썸프	1.4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44		
	227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28	First stage Mist Eliminnator	671.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29	Second stage Mist Eliminnator	1,007.2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상동	0		
	230	Booster Fan Innet Danper	184.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상동	0		
	231	Booster Fan Outlet Danper	255.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32	Energency Danper	130.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상동	0
	233	Fgd Fan Outlet Danper	141.1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상동	0
	234	가스히터	864.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상동	0
	235	여과수썸프	118.5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상동	0
	236	계량대	3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9
	237	전기집진기	10,37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이 목록 순번 451 내지 462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38	가스절연발전소	1,20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204
	239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4,87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0	AIR PREHEATER INETDAMEER	2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1	Expansion Joint	30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2	오폐수처리장기계실	205.5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57호증 1내지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05.57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정당 여부 판단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43	Scr탈질설비구조물	4,7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상동	4,752.00
	244	정화조	28.69	0.00	비과세대상	1.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2.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이며, 피고는 자의적으로 정화조를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음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 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 을제33호증59: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8.69
	245	저장조	241.40	0.00	불특정	특정이 필요함.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 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 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41.4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246	심층취수로	1,351.48	1,351.48		다툼없음					1,351.48
	247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549.89	549.89		다툼없음					549.89
	248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148.94	148.94		다툼없음					148.94
	249	취수장 옆 배수로	162.64	162.64		다툼없음					162.64
	250	취수로	2,585.80	2,585.80		다툼없음					2,585.80
	251	순수탱크	346.19	346.19		다툼없음					346.19
	252	복합 일상폐수조	401.98	401.98		다툼없음					401.98
	253	오수정화조	108.00	108.00		다툼없음					108.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54	복합 함유폐수조	163.40	163.40		다툼없음						163.40	
	255	냉각수 배수관로 1	273.01	273.01		다툼없음						273.01	
	256	냉각수 배수관로 2	511.57	511.57		다툼없음						511.57	
	257	냉각수 배수관로	409.05	409.05		다툼없음						409.05	
	258	심층취수로입구 (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221.76	221.76		다툼없음						221.76	
	259	심층취수관로 (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3,672.06	3,672.06		다툼없음						3,672.06	
	260	취수장	5,081.23	5,081.23		다툼없음						5,081.23	
	261	취수로	26,298.02	26,298.02		다툼없음						26,298.02	
	262	취수로	3,060.74	3,060.74		다툼없음						3,060.74	
	263	복수저장탱크	330.28	330.28		다툼없음						330.28	
	264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307.72	307.72		다툼없음						307.72	
	265	조절지 수조	304.00	304.00		다툼없음						304.00	
	266	가압장 수조	317.00	317.00		다툼없음						317.00	
	267	취수장 수조	50.00	50.00		다툼없음						50.00	
	268	원수탱크B	2,147.20	2,147.20		다툼없음						2,147.20	
	269	원수탱크D	6,358.50	6,358.50		다툼없음						6,358.50	
	270	재활용수조	48.00	48.00		다툼없음						48.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71	염소저장조	14.12	14.12		다툼없음					14.12
	272	복합염산탱크	2.83	2.83		다툼없음					2.83
	273	염산저장탱크	33.46	33.46		다툼없음					33.46
	274	가성소다저장탱크	80.44	80.44		다툼없음					80.44
	275	저회저장조	157.00	157.00		다툼없음					157.00
	276	비회저장조	562.80	562.80		다툼없음					562.80
	277	석고탈수탱크	54.00	54.00		다툼없음					54.00
	278	석회석일일저장조	28.00	28.00		다툼없음					28.00
	279	석회석슬러리탱크	46.50	46.50		다툼없음					46.50
	280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81	탈황비상저장탱크	165.00	165.00		다툼없음					165.00
	282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83	염기저장조	9.00	9.00		다툼없음					9.00
	284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5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6	복합소포제주입탱크	5.66	5.66		다툼없음					5.6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87	수조	1,164.3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 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 을제76호증6 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64.38
	288	저장조	1,475.6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772.29
	289	펌프실(2-1)(2-2)	30.2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16~17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0.21
	290	기력 LOSERVICE TANK	276.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47			상동	276.32
	291	CPI유수분리기	48.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0			상동	48.76
	292	콘크리트구조물	13.8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5			이 목록 순번 168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293	원수탱크D(2기증 미과세1기)	6,358.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3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에서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복 산정 여부 알 수 없음.	0.00
	294	복합유수분리기	309.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95	복합오폐수집수지	397.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96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2,64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222,223,304p 을제83호증 3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640.50
	297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40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406p 을제83호증 34			상동	4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및 시기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98	경유저장탱크	53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 을제83호증 35	상동	530.66
	299	원수저장탱크	2,098.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 을제83호증 36	상동	2,098.08
	300	1차침전조	1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01	1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2	2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3	3차반응탱크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4	1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5	1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6	2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7	2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8	2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9	3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0	1차처리수조	62.7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이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11	압력여과기	3.7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2	활성탄여과기	12.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3	1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4	2차PH처리수조	4.9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5	불소흡착탑	6.2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6	2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7	방류수조	6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8	농축조	4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9	슬러지저장조	1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0	케이크호퍼	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1	세척수탱크	1.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2	황산알루미늄호퍼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3	탄산나트륨호퍼	2.5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24	용해주입탱크	5.3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5	호퍼공기저장탱크	0.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6	용해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7	길레이트주입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8	폴리머용해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9	폴리머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0	염산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1	염산가스실포트	0.1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2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3.1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3	차아염산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4	아황산용해탱크	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5	MXINGTANK	4.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112p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36	취수펌프장	37.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3p 을제83호증 3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7.5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본 위법 사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37	용수저장탱크	1,017.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4p 을제83호증 38	상동	1,017.36
저유조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338	복합 DO Storage tank	1,118.10	1,118.10		다툼없음					1,118.10
	339	Clean&Dirty Oil tank	20.50	20.50		다툼없음					20.50
	340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88.20	88.20		다툼없음					88.20
	341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88.00	88.00		다툼없음					88.00
공작물	342	7,8호기 컨베이어설비	34,155.78	0.00	비과세대상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 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 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 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 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 (2007-427)	1. 7,8호기 컨베이어설비 10,485.2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 23,670.56㎡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이므로 포함하되, 다만 을 제24호증의 2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하단컨베이어설비 등은 같은 지점의 상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설비와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342-1)' 기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공제하고, 또한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342-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추가 공제한 면적인 21,346.98㎡만 인정함.	21,346.9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부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43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2,944.14	0.00	기과세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을제32호증6내지18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2,944.14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344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2,076.80	2,076.80		다툼없음					2,076.80
	345	취수관로	902.00	902.00		다툼없음					902.00
	346	SCW PIPE	256.00	256.00		다툼없음					256.00
	347	급수탱크관련송수관	691.75	691.75		다툼없음					691.75
	348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19.18	19.18		다툼없음					19.18
	349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835.00	835.00		다툼없음					835.00
	350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351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2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3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1.00	31.00		다툼없음					31.00
	354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389.00	389.00		다툼없음					389.00
	355	취수장옆 HUME PIPE	2.57	2.57		다툼없음					2.57
	356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1,106.09	1,106.09		다툼없음					1,106.0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수관	357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768.00	768.00		다툼없음					768.00
	358	CWP PIPE(CWP~보일러건물)	3,840.00	3,840.00		다툼없음					3,840.00
	359	수처리 건물 관련	2.04	2.04		다툼없음					2.04
	360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0.39	0.39		다툼없음					0.39
	361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15,750.00	15,750.00		다툼없음					15,750.00
	362	옥외소화관	2,932.8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을제61호증 1내지 11 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 을제83호증 3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932.88
	363	공업용수도수관	150.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224p 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4	공업용수유공관	143.0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1283p 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상동	0.00
	365	재순환수관	2,847.2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311p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 을제83호증 4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6	전처리배관(강관,PEM 수도관)	1,08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783p 을제83호증 41	상동	0.00
	367	애쉬라인	4,3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 을제83호증 42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다만 면적은 1,440㎡(= 0.3m×2,400m×2)	1,44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부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68	폐수배관	13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9	회이송관	1,857.1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 을제83호증 4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857.17
	370	섬프펌프관	1.2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6p 을제83호증 44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1	송수관 (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1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2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1,58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IV 16-4p *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상동	0
	373	경유배관	792.00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갑가 제80호증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을제32호증2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74	1부두경유배관	4.95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을제32호증3B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75	도관(회이송관)	3,486.88	0.00	기과세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갑가제3호증의3 16면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을제32호증53내지57 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상 회이송관은 그보다 넓은 수평투영면적을 가진 회이송관받침대(순번 55)와 별도로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0.00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송유관 및 도관	376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9.00	9.00		다툼없음					9.00
	377	경유저장탱크송유관	3.50	3.50		다툼없음					3.50
	378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79	연료공급실송유관	41.20	41.20		다툼없음					41.20
	380	오일탱크관련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81	LO SERVICE PUMP TO BOILER	24.36	24.36		다툼없음					24.36
	382	LO SERVICE PUMP TO BOILER	3.57	3.57		다툼없음					3.57
	383	LO SERVICE PUMP TO BOILER	0.59	0.59		다툼없음					0.59
	384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2.03	2.03		다툼없음					2.03
	385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2.00	2.00		다툼없음					2.00
	386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38.58	38.58		다툼없음					38.58
	387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60	1.60		다툼없음					1.6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허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88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38.56	138.56		다툼없음					138.56
	389	LO SERVICE PUMP TO BOILER	59.78	59.78		다툼없음					59.78
	390	LO SERVICE PUMP TO BOILER	45.57	45.57		다툼없음					45.57
	391	도관시설	13,905.19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 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이 목록 순번 제27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13,893.69
	392	중유이송배관	77.83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806p *2013년 폐기시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393	망루	9.91	9.91		다툼없음					9.91
	394	종합사무실	8,437.77	8,437.77		다툼없음					8,437.77
	395	경비실(신축)	351.25	351.25		다툼없음					351.25
	396	기상관측소	7.29	7.29		다툼없음					7.29
	397	모의제어반	1,569.86	1,569.86		다툼없음					1,569.86
	398	무기고	66.96	66.96		다툼없음					66.96
	399	소각로	259.18	259.18		다툼없음					259.18
	400	이륜차고	135.00	135.00		다툼없음					135.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01	구종합사육	7,474.12	7,474.12		다툼없음					7,474.12
	402	종합사무실-건설소	3,291.08	3,291.08		다툼없음					3,291.08
	403	홍보관	340.20	340.20		다툼없음					340.20
	404	홍보관사무실	57.40	57.40		다툼없음					57.40
	405	#1 외부화장실-2호기둥	7.28	7.28		다툼없음					7.28
	406	배양장	562.50	562.50		다툼없음					562.50
	407	(종묘)배양장창고	96.00	96.00		다툼없음					96.00
	408	온배수양식동	504.00	504.00		다툼없음					504.00
	409	온배수양식장펌프실	21.60	21.60		다툼없음					21.60
	410	웅천 가압장	162.00	162.00		다툼없음					162.00
	411	웅천 사택	43.65	43.65		다툼없음					43.65
	412	주산 사택	55.72	55.72		다툼없음					55.72
	413	주산 취수장	161.00	161.00		다툼없음					161.00
	414	경비실(구정문수위실)	100.23	100.23		다툼없음					100.23
	415	정문경비실	64.04	64.04		다툼없음					64.04
	416	후문경비실	54.98	54.98		다툼없음					54.9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17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8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19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0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1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2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23	망루1형	12.35	12.35		다툼없음							12.35
	424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425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426	초소2형	18.83	18.83		다툼없음							18.83
	427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8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29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30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31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432	간이초소 NO-1	5.76	5.76		다툼없음							5.7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33	간이초소 NO-2	5.76	5.76		다툼없음						5.76	
	434	간이초소 NO-3	5.76	5.76		다툼없음						5.76	
	435	간이초소 NO-4	5.76	5.76		다툼없음						5.76	
	436	벙커	7.20	7.20		다툼없음						7.20	
	437	#1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438	#2 터빈및주제어실	7,163.94	7,163.94		다툼없음						7,163.94	
	439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27,055.48	27,055.48		다툼없음						27,055.48	
	440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26,096.71	26,096.71		다툼없음						26,096.71	
	441	#1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42	#2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43	#3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4	#4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5	#5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6	#6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47	#1 보조보일러제어실	212.15	212.15		다툼없음						212.15	
	448	#2 보조보일러전원실	102.48	102.48		다툼없음						102.4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49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450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451	#1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2	#2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3	#3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4	#4 전기집진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55	#3 집진기 NO-1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6	#3 집진기 NO-2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7	#4 집진기 NO-3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8	#4 집진기 NO-4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59	#5 집진기 NO-5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0	#5 집진기 NO-6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1	#6 집진기 NO-7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2	#6 집진기 NO-8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63	종합창고	7,144.22	7,144.22		다툼없음					7,144.22
	464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72.00	72.00		다툼없음					7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65	#1,2 물처리실	1,260.80	1,260.80		다툼없음					1,260.80
	466	#3~4 물처리건물	2,911.12	2,911.12		다툼없음					2,911.12
	467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18.56	18.56		다툼없음					18.56
	468	산소저장창고	35.00	35.00		다툼없음					35.00
	469	(산업폐기물)저장창고	141.12	141.12		다툼없음					141.12
	470	#1,2 샤워장	395.18	395.18		다툼없음					395.18
	471	염소주입실	622.16	622.16		다툼없음					622.16
	472	#1,2 유지창고	350.00	350.00		다툼없음					350.00
	473	정비고	611.00	611.00		다툼없음					611.00
	474	폐기물저장창고	230.67	230.67		다툼없음					230.67
	475	폐수처리관리실	206.36	206.36		다툼없음					206.36
	476	폐수처리건물	546.83	546.83		다툼없음					546.83
	477	부두접안정보실	15.12	15.12		다툼없음					15.12
	478	#1 비회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79	#2 비회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80	#1 사일로 전원실	52.00	52.00		다툼없음					5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분 이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81	상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482	저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483	석탄분쇄실 1	802.75	802.75		다툼없음					802.75
	484	석탄분쇄실 2	814.00	814.00		다툼없음					814.00
	485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55.50	55.50		다툼없음					55.50
	486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11.00	11.00		다툼없음					11.00
	487	석탄하역건물	135.00	135.00		다툼없음					135.00
	488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45.00	45.00		다툼없음					45.00
	489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5.30	5.30		다툼없음					5.30
	490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7.93	7.93		다툼없음					7.93
	491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7.15	7.15		다툼없음					7.15
	492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6.37	6.37		다툼없음					6.37
	493	유연탄하역조정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494	유연탄작업관리실	694.02	694.02		다툼없음					694.02
	495	입하탄시료채취실	287.10	287.10		다툼없음					287.10
	496	회처리전원실	67.51	67.51		다툼없음					67.5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건물	497	조탄실 1	140.00	140.00		다툼없음							140.00
	498	조탄실 2	301.75	301.75		다툼없음							301.75
	499	조탄실 3	414.40	414.40		다툼없음							414.40
	500	조탄실 4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501	조탄실 5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02	조탄실 6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03	조탄실 NO-1	257.57	257.57		다툼없음							257.57
	504	조탄실 NO-2	256.26	256.26		다툼없음							256.26
	505	조탄실 NO-3	269.68	269.68		다툼없음							269.68
	506	조탄실 NO-4	85.08	85.08		다툼없음							85.08
	507	조탄실 NO-5	85.85	85.85		다툼없음							85.85
	508	조탄실 N0-6	127.07	127.07		다툼없음							127.07
	509	조탄실 N0-7	1,143.42	1,143.42		다툼없음							1,143.42
	510	조탄실 N0-8	1,598.88	1,598.88		다툼없음							1,598.88
	511	조탄실 N0-9	398.23	398.23		다툼없음							398.23
	512	조탄실 N0-10	116.80	116.80		다툼없음							116.8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13	조탄실	147.11	147.11		다툼없음					147.11
	514	조탄실	253.52	253.52		다툼없음					253.52
	515	트랜스퍼타워 18	217.18	217.18		다툼없음					217.18
	516	트랜스퍼타워 19	224.71	224.71		다툼없음					224.71
	517	트랜스퍼타워 20	1,323.18	1,323.18		다툼없음					1,323.18
	518	트랜스퍼타워 21	226.19	226.19		다툼없음					226.19
	519	회처리펌프제어실	23.80	23.80		다툼없음					23.80
	520	회처리순환펌프실	95.20	95.20		다툼없음					95.20
	521	회처리순환펌프실	408.00	408.00		다툼없음					408.00
	522	소회수및원수펌프실	380.25	380.25		다툼없음					380.25
	523	순환수보조펌프실	299.75	299.75		다툼없음					299.75
	524	송유및소화수펌프실	383.00	383.00		다툼없음					383.00
	525	해수소화펌프실	25.39	25.39		다툼없음					25.39
	526	해수인양펌프조작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527	유류가압펌프실	336.00	336.00		다툼없음					336.00
	528	연료유펌프실-#1,2호기	654.72	654.72		다툼없음					654.7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29	연료유공급펌프실	645.00	645.00		다툼없음						645.00	
	530	#3,4연료조절펌프실	44.84	44.84		다툼없음						44.84	
	531	#5,6연료조절펌프실	44.84	44.84		다툼없음						44.84	
	532	가스창고-#2호기옆	24.00	24.00		다툼없음						24.00	
	533	가스창고-2화학부옆	5.76	5.76		다툼없음						5.76	
	534	가스창고-2화학부옆	7.92	7.92		다툼없음						7.92	
	535	가스창고-고압	150.00	150.00		다툼없음						150.00	
	536	질소가스저장실	34.76	34.76		다툼없음						34.76	
	537	#3,4 질소가스저장실	74.00	74.00		다툼없음						74.00	
	538	분석실가스저장고	17.64	17.64		다툼없음						17.64	
	539	#3 서비스가스창고-1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0	#4 서비스가스창고-2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1	#5 서비스가스창고-3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2	#6 서비스가스창고-4	28.00	28.00		다툼없음						28.00	
	543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1,152.00	1,152.00		다툼없음						1,152.00	
	544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2,072.90	2,072.90		다툼없음						2,072.9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45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155.15	155.15		다툼없음					155.15
	546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1,440.00	1,440.00		다툼없음					1,440.00
	547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512.00	512.00		다툼없음					512.00
	548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재순환펌프동-1 (한전산업 129.33 임대, 한전기공 105 임대)	2,303.67	2,303.67		다툼없음					2,303.67
	549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스탑재순환펌프동-2	2,538.00	2,538.00		다툼없음					2,538.00
	550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1,575.23	1,575.23		다툼없음					1,575.23
	551	탈황설비 티터(TT)-01	107.39	107.39		다툼없음					107.39
	552	탈황설비 티터(TT)-02	313.57	313.57		다툼없음					313.57
	553	탈황설비 티터(TT)-03	156.81	156.81		다툼없음					156.81
	554	탈황설비 티터(TT)-04	417.29	417.29		다툼없음					417.29
	555	탈황설비 티티티(TTT)-01	595.92	595.92		다툼없음					595.92
	556	탈황설비 엘브이(LV)-02	145.54	145.54		다툼없음					145.54
	557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58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59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60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61	복합 주제어건물-1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562	복합 주제어건물-2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563	복합 #1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64	복합 #2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65	복합 #3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566	복합 #4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567	복합 #5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568	복합 #6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569	복합 #7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70	복합 #8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571	복합 #1 스팀터빈-1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572	복합 #2 스팀터빈-1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573	복합 #3 스팀터빈-2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574	복합 #4 스팀터빈-2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575	복합 #1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6	복합 #2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77	복합 #3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8	복합 #4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79	복합 #5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0	복합 #6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1	복합 #7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2	복합 #8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583	복합 공기압축기실및 비상발전기실	245.58	245.58		다툼없음					245.58
	584	복합 종합창고	2,600.84	2,600.84		다툼없음					2,600.84
	585	복합 유지창고	365.06	365.06		다툼없음					365.06
	586	복합 염소주입실	252.58	252.58		다툼없음					252.58
	587	복합 급수펌프실	76.78	76.78		다툼없음					76.78
	588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92.81	92.81		다툼없음					92.81
	589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204.52	204.52		다툼없음					204.52
	590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173.05	173.05		다툼없음					173.05
	591	복합 #1,2 질소가스창고-1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2	복합 #3,4 질소가스창고-2	25.97	25.97		다툼없음					25.97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93	복합 #5,6 질소가스창고-3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4	복합 #7,8 질소가스창고-4	25.97	25.97		다툼없음							25.97
	595	복합경비실	57.86	57.86		다툼없음							57.86
	596	복합 망루-1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7	복합 망루-2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8	복합 망루-3	12.99	12.99		다툼없음							12.99
	599	복합 망루-4	12.99	12.99		다툼없음							12.99
	600	복합 망루-5	12.99	12.99		다툼없음							12.99
	601	콘테이너하우스	36.00	36.00		다툼없음							36.00
	602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17.50	17.50		다툼없음							17.50
	603	분진측정실	32.00	32.00		다툼없음							32.00
	604	망루	7.92	7.92		다툼없음							7.92
	605	경비실	10.00	10.00		다툼없음							10.00
	606	탈황 #3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07	탈황 #3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08	탈황 #4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타당한 증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09	탈황 #4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10	탈황 #5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11	탈황 #5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12	탈황 #6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13	탈황 #6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14	빙카	7.20	7.20		다툼없음					7.20
	615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132.19	132.19		다툼없음					132.19
	616	기타건물	5,777.66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18호증 1내지3 을제36호증 1 *법원 석명명령에 따른 준비서면(2015.11.17)을 통해 당초면적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컨테이너등(을제18호증2) 중 순번 25, 26 기재 건물 84.96㎡ 은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 인정	5,692.70
합계			**3,791,519.95**	**478,409.59**				-	-		**1,106,458.7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2-1)

컨베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BC12AB하단(B,C)	124.16	89.6	7 *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2-2)

컨베이어설비명	피고 면적	오류 내용	인정 면적	차이
BC43A/B의 A	1,142.10	수평투영 오류	1,057.50	84.6
BC4A/B	827.51	상동	788.5	39.01
BC22	397.59	상동	365.6	31.99
BC23	391.5	상동	360	31.5
BC12A/B의 A	2,071.30	상동	1,770.23	301.07
BC61	531.81	상동	467.4	64.41
BC62	330.72	상동	300.3	30.42
BC63	396.4	상동	328	68.4
BC64 컨베이어	402.3	상동	346.5	55.8
BC66A/B	598.98	상동	475.7	123.28
BC53A/B의 C	988.22	상동	904.62	83.6
BC40A/B의 A	2,302.30	상동	1,995	307.3
BC33A/B	973.44	합계 오류	802.42	171.02
BC32A/B	775.96	합계 오류	664.48	111.48
			합계	1503.8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열람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4 2(연면적 산정표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	석회석부두	2,573.00	0.00	비과세대상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 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7호증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 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2	물양장	6,558.00	0.00	비과세대상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 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3	호 안	6,460.00	0.00	비과세대상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엎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 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4	케이블터널	38,697.36	7,346.57	면적산출오류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 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 공문(갑가제25호증)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 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 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 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 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상동	0.00
	5	케이블보호철판	1.50	0.00	비과세대상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 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이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 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과 처분 위법 사유 각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	EDB 맨홀	2.56	0.00	기과세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35,36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7	케이블 트레이	11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 되어야 함.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을제25호증37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8	EDB 맨홀	26.94	0.00	기과세	1.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 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갑가 제55호증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케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 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 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 *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을제25호증101내지 103 을제25호증128 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상동	0.00
	9	케이블시설	0.70	0.00	면적중복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 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갑가제3호증 1내지3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104 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상동	0.00
	10	케이블트레이및전선관	1,487.62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25호증37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근거 감재	원고 주장과 처분 위법 사유 감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1	케이블 터널 345kV	0.00	898.36	면적산출오류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 *2015.11.17 석명명령 제출 자료에 따른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 (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0
	12	취수장케이블트레이	858.0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15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3	취수장케이블트레이	433.20	0.00	면적중복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1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208,209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4	CWP 케이블트레이	30.00	0.00	면적중복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을제25호증8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상동	0.00
	15	옹벽 1,2,3등	19,173.62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엮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 을제26호증116내지119,을제26호증27내지129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면적정정	상동	0.00
	16	옹벽24	1,040.0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영보리 741)	갑가 제57호증, 갑가 제58호증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을제26호증106 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 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	옹벽25-27	3,194.12	0.00	비과세대상	비탄방지펜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 을제26호증107,108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8	옹벽28-30	7,233.40	0.00	비과세대상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비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109내지111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19	옹벽 31,32	13,185.00	0.00	비과세대상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 을제26호증112,113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20	옹벽34-1,34-2,54~56	8,290.65	0.00	비과세대상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상동	0.00
	21	옹벽57,58	1,581.2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을제26호증131 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상동	0.00
	22	옹벽59~62	3,152.40	0.00	비과세대상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 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처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을제26호증132 을제26호증133	상동	0.00
	23	옹벽63	27,280.00	0.00	비과세대상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갑가 제57,58호증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 ※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을제26호증134 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 을제47호증2: 수문출입구사진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4	옹벽11	304.92	0.00	기과세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갑가제3호증의3 1면, 갑가제3호증의2 1면 갑가제3호증의3 5면	폭 30.2m, 길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 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을제26호증93 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25	옹벽17	23.46	0.00	기과세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을제26호증98 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상동	0.00
	26	옹벽64~66	3,570.00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 1.8m와 4.4m 및 1.5m로 기 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 임.	을제26호증135,136	상동	0.00
	27	2부두Air라인	11.50	0.00	비과세대상	공기배관은 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당초 원고가 공기배관으로서 2006년부터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한 시설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을제32호증5© 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실무해설	상동	0.00
	28	스팀관	150.00	0.00	비과세대상	스팀관은 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을제32호증67,68 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 실무해설	상동	0.00
	29	스팀관	819.00	0.00	비과세대상	상동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건물외부의 시설물을 건물내부 시설물과 연결되어 있다며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는 것임.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을제32호증23,24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재 근거 각재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0	법면	57,140.00	0.00	비과세대상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갑가제72호증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흡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원고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 을제37호증5,6: 시설물시설내역 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흡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31	CWP 옆 구조물	6,045.20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 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쳐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 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을제26호증1~137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면적 정정	상동	상동
	32	POND(연못)	21,575.25	0.00	비과세대상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동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입증 완료함)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26호증129내지133 을제34호증	상동	0.00
	33	공업용수저수지	115,153.00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포리 720잡).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74호증1내지3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제 출력일자 : 2017-08-23
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4	남부회처리장	1,360,36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을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 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 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 을제75호증	상동	0.00
	35	북부회처리장	1,072,596.00	0.00	비과세대상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상동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36	케이블 터널 154kV	336.14	336.14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조 등이 아닌 시설물은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에 있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37	항만시설(1부두) MT DOCK	7,242.00	7,242.00		상동				상동	0.00
	38	ACESS ROAD	1,322.00	1,322.00		상동				상동	0.00
	39	CAT WALK-1	160.00	160.00		상동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 시설	40	CAT WALK-2	78.00	78.00		상동				상동	0.00
	41	CAT WALK-3	40.00	40.00		상동				상동	0.00
	42	CAT WALK-4	160.00	160.00		상동				상동	0.00
	43	MD-1	100.00	100.00		상동				상동	0.00
	44	MD-2	100.00	100.00		상동				상동	0.00
	45	MD-3	100.00	100.00		상동				상동	0.00
	46	MD-4	100.00	100.00		상동				상동	0.00
	47	항만시설(2부두) MT DOCK	7,574.00	7,574.00		상동				상동	0.00
	48	ACESS ROAD	1,206.00	1,206.00		상동				상동	0.00
	49	CAT WALK-1	136.00	136.00		상동				상동	0.00
	50	CAT WALK-2	40.00	40.00		상동				상동	0.00
	51	CAT WALK-3	63.00	63.00		상동				상동	0.00
	52	CAT WALK-4	160.00	160.00		상동				상동	0.00
	53	MD-5	200.00	200.00		상동				상동	0.00
	54	MD-6	200.00	200.00		상동				상동	0.00
	55	MD-7	200.00	200.00		상동				상동	0.00
	56	회이송관받침대	28,396.00	28,396.00		상동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7	케이블터널	481.00	481.00		상동				상동	0.00
	58	케이블터널	214.00	214.00		상동				상동	0.00
	59	케이블터널	1,089.00	1,089.00		상동				상동	0.00
	60	케이블터널	1,797.00	1,797.00		상동				상동	0.00
	61	케이블터널	1,130.00	1,130.00		상동				상동	0.00
	62	BC-1A/B				다툼없음			이 목록 순번 343번 기재 7, 8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63	BC-2A/B				다툼없음			상동		
	64	BC-3A/B				다툼없음			상동		
	65	BC-43A/B				다툼없음			상동		
	66	BC-42A/B				다툼없음			상동		
	67	BC-4A/B				다툼없음			상동		
	68	BC-8				다툼없음			상동		
	69	BC-9				다툼없음			상동		
	70	BC-22				다툼없음			상동		
	71	BC-23				다툼없음			상동		
	72	BC-12A/B				다툼없음			상동		
	73	BC-61				다툼없음			상동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 재판사무구술 및 재판서 인터넷열람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제2항 / 열람 · 출력일자 : 2017-08-2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74	BC-62				다툼없음			상동		
	75	BC-63				다툼없음			상동		
	76	BC-64				다툼없음			상동		
	77	BC-66A/B				다툼없음			상동		
	78	BC-11				다툼없음			상동		
	79	BC-51A/B				다툼없음			상동		
	80	BC-52A/B				다툼없음			상동		
	81	BC-53A/B				다툼없음			상동		
	82	BC-40A/B				다툼없음			상동		
	83	BC-36				다툼없음			상동		
	84	BC-37				다툼없음			상동		
	85	BC-33A/B				다툼없음			상동		
	86	BC-32A/B				다툼없음			상동		
	87	구조물(북부남쪽제방)	5,040.00		불특정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가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1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88	구조물(북부동쪽제방)	14,25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2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89	구조물(북부서쪽제방)	8,63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3	상동	0.00
	90	구조물(남부서쪽제방)	4,99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4	상동	0.00
	91	구조물(남부동쪽제방)	5,836.7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5	상동	0.00
	92	저탄장	138,252.80		불특정	상동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을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 빔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 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 을제83호증 6	상동	0.00
	93	남부회사장선착장	175.00		불특정	상동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가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p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94	북부회사장교량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3p 을제83호증 7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95	공업용수제방	1,650.00		불특정	상동		사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 을제83호증 8	상동	0.00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96	해안도로 (기력1,2호기)	24,0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4호증 1내지48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97	주도로 (기력1,2호기)	8,5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98	간선도로 (기력1,2호기)	22,4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99	보조간선도로 (기력1,2호기)	2,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0	주도로 (기력3,4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1	간선도로 (기력3,4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2	보조간선도로 (기력3,4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3	주도로 (기력5,6호기)	2,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4	간선도로 (기력5,6호기)	3,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5	보조간선도로 (기력5,6호기)	5,4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6	내부도로 (복합 유수분리기 옆)	104.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7	내부도로 (복합 터빈건물 뒤)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8	내부도로 (복합 경유탱크 옆)	3,878.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09	내부도로 (복합 1호기)	411.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0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8,257.4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11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421.8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2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1,7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3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2,8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4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4,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5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1,4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6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2,3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7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4,64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8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5,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19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3,1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0	내부도로 (구본관앞~우회도로)	1,96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1	내부도로 (테니스장앞~횡단도로)	1,6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2	내부도로 (종합창고뒤~횡단도로)	1,9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3	내부도로 (종합창고~간선도로)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124	주차장 (기력발전소 교육원)	500.00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을제65호증 1내지23 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25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6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뒤)	1,575.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7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1,2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8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87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29	주차장 (기력발전소 식당앞)	3,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0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옆)	1,0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1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앞)	2,7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2	주차장 (기력1호기 변압기옆)	382.3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3	주차장 (기력2호기옆)	94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4	주차장 (기력3호기옆)	1,08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5	주차장 (기력3호기변압기옆)	156.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6	주차장 (사일로앞)	60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7	주차장 (기력6호기옆)	1,477.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8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875.9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39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134.6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40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355.6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141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256.8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42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1,896.6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143	N2저장조관련 가스관	2.04	2.04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조 등이 아닌 시설물은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에 있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44	가 스 관	504.51	504.51		상동				상동	0.00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145	복개시설(취수장다리)	1,293.18	1,293.18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조 등이 아닌 시설물은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에 있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46	스팀배관맨홀	16.93	0.00	기과세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을제25증33: 현황사진 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00
	147	우수맨홀	8.05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갑가제3호증의1내지3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 을제34호증6내지9 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 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0.00
	148	우수맨홀	7.50	0.00	기과세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을제31호증30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49	우수배수로	13,655.65	0.00	기과세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중복주장.	을제34호증1내지16 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상동	0.00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및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150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2,637.00	2,637.00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조 등이 아닌 시설물은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에 있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151	냉각수 배수관로	30.10	30.10		상동				상동	0.00
	152	STRUCTURE (배수관로 말단구조물)	327.58	327.58		상동				상동	0.00
	153	배수관로	3,351.92	3,351.92		상동				상동	0.00
	154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8,672.00	0.00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 2007년부터는 비과세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 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인 2006.12.31.이고,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은 2006.12.30. 개정되어 그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참고자료	상동	0.00
	155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01.45	301.45		상동				상동	0.00
	156	냉각수배수관로 (집수정포함)	8,254.53	8,254.53		상동				상동	0.00
	157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495.32	495.32		상동				상동	0.00
	158	배수암거	2,869.3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가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4호증 11내지12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59	배수로(저탄장 앞,뒤)	3,236.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4호증 13내지1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 (을제34호증 13: 1,694㎡, 을제34호증 14: 1,542.8㎡)	상동	0.00
	160	외곽배수로	47,7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9	상동	0.00
	161	BOXCUIYERT	1,68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0	상동	0.00
	162	배수로	1,948.1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26호증 93	상동	0.00
	163	HUME PIPE	118.9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 을제83호증 11	상동	0.00
	164	흄관	2,5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423p 을제83호증 12	상동	0.00
	165	1~6호기 연돌면적	3,350.16	0.00	비과세대상	연돌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시설물이며,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2006.12.30법률개정) ※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가력도면(갑가 제16호증), 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 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기계장치인 보일러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 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3,350.1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치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 위법 사유 각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66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3,320.64	0.00	기과세, 비과세대상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 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 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1호증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을제27호증7내지11 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320.64
	167	예비변압기	224.00	0.00	비과세대상	1. 야적된 자재임.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9호증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을제31호증101 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24.00
	168	연소용공기유입구	761.76	0.00	비과세대상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5호증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을제31호증80 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61.76
	169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8,245.23	0.00	특정필요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통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 을제33호증55 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 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 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기계장치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5,884.33
	170	기계장치	18.94	0.00	비과세대상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을제31호증36 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71	송풍구	2.85	0.00	기과세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2호증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2	취수장내기계장치	21.84	0.00	기과세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 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을제31호증6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173	HRSG	644.00	30.00	면적산출오류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 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6호증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644
	174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백필터	116.92	0.00	기과세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 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67호증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95,96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116.92
	175	증기배출구	745.82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8호증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을제31호증99,100 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 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45.82
	176	환풍구	168.48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 을제31호증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28
	177	내부공기배출구	328.56	0.00	비과세대상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6,107,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28.56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178	취수펌프시설지역	1,392.93	1,392.93		다툼없음					1,392.93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9	CWP STRUCTURE	960.00	960.00		다툼없음					960.00
	180	CWP크레인	392.70	392.70		다툼없음					392.70
	181	SLP크레인	896.04	896.04		다툼없음					896.04
	182	SLP크레인 레일	15.20	15.20		다툼없음					15.20
	183	CWP 크레인 레일	65.80	65.80		다툼없음					65.80
	184	복합연소용필터	39.25	39.25		다툼없음					39.25
	185	복합연돌	158.50	158.50		다툼없음					158.50
	186	복합주변압기	257.44	257.44		다툼없음					257.44
	187	복합 HRSGSUMP	33.00	33.00		다툼없음					33.00
	188	복합 GT7.8 변압기	37.72	37.72		다툼없음					37.72
	189	복합경유가압펌프	91.00	91.00		다툼없음					91.00
	190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69.00	69.00		다툼없음					69.00
	191	취수펌프시설	3,260.07	3,260.07		다툼없음					3,260.07
	192	CWP STRUCTURE	2,652.00	2,652.00		다툼없음					2,652.00
	193	석회석이송탑(TT01)	33.00	33.00		다툼없음					33.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계장치	194	석회석이송탑(TT02)	80.00	80.00		다툼없음					80.00
	195	석회석이송탑(TT03)	34.65	34.65		다툼없음					34.65
	196	석회석이송탑(TT04)	39.00	39.00		다툼없음					39.00
	197	석회석이송설비(LP01)	485.56	485.56		다툼없음					485.56
	198	석회석이송설비(LP02)	720.38	720.38		다툼없음					720.38
	199	석회석이송설비(LP03)	1,058.68	1,058.68		다툼없음					1,058.68
	200	석회석이송설비(LP04)	129.35	129.35		다툼없음					129.35
	201	해수가압펌프	72.00	72.00		다툼없음					72.00
	202	변압기	2,048.66	2,048.66		다툼없음					2,048.66
	203	기동변압기	261.66	261.66		다툼없음					261.66
	204	탈황기동변압기	7.79	7.79		다툼없음					7.79
	205	탈황보조변압기	1,884.90	1,884.90		다툼없음					1,884.90
	206	CWP 크레인 레일	90.47	90.47		다툼없음					90.47
	207	크레인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208	크레인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09	상탄기	672.00	672.00		다툼없음					672.00
	210	상탄기	448.00	448.00		다툼없음					448.00
	211	석탄하역기	1,250.00	1,250.00		다툼없음					1,250.00
	212	석탄하역기	1,136.00	1,136.00		다툼없음					1,136.00
	213	상탄기레일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214	상탄기레일	339.20	339.20		다툼없음					339.20
	215	석탄하역기레일	73.90	73.90		다툼없음					73.90
	216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22,539.00	22,539.00		다툼없음					22,539.00
	217	고전압시설	177.1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1호증 81내지82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177.12
	218	가스장치	402.4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1내지8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02.48
	219	복합변압기	82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상동	825
	220	DUST COLLECTOR SYSTEM(24기)	5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상동	586.56
	221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89.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96	이 목록 순번 174번 기재 시설물의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22	수문	74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피고 제출 증거(을 제60호증의 9)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32.2m×23m) 인정. 기계장치이므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함됨.	740.60
	223	복합HRSG	3,19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196
	224	HP Drum	153.4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이 목록 순번 223번 기재 복합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0
	225	IP Drum	6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상동	0
	226	LP Drum	62.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상동	0
	227	저장지역연료유썸프	1.4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 1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44
	228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29	First stage Mist Eliminnator	671.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30	Second stage Mist Eliminnator	1,007.2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상동	0
	231	Booster Fan Innet Danper	184.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상동	0
	232	Booster Fan Outlet Danper	255.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상동	0
	233	Energency Danper	130.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상동	0
	234	Fgd Fan Outlet Danper	141.1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상동	0
	235	가스히터	864.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36	여과수썸프	118.5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상동	0
	237	계량대	3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거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0
	238	전기집진기	10,37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이 목록 순번 405, 413, 418 내지 420, 427 내지 429, 432, 433, 437, 438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39	가스절연발전소	1,20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204
	240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4,87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1	AIR PREHEATER INETDAMEER	2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2	Expansion Joint	30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43	오폐수처리장기계실	205.5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57호증 1내지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05.57
	244	Scr탈질설비구조물	4,7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상동	4,752.00
	245	냉각수심층취수구	5,245.30	0.00	비과세대상	-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급배수 시설은 2006년부터 과세대상 아님		냉각수심층취수구는 유입흡수구와 유입수로 및 집수조가 한 구조로 시설되어 있고 유입흡수구는 취수로보다 3m높게 시설하여 저장기능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고는 설계서를 달리 설명하고 있음. 또한, 행자부심사결정에서도 화력발전소 취수로는 "큰통의 해수저장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을제3호증2: 심층취수구설계도면 을제22호증1내지2: 설계도면 및 계통도 참고자료5: 냉각수이용방법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참고자료14-1,14-2: 행자부심사결정서(99-212호,2001-97호)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46	복합발전 취수장옆배수로	162.64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복합발전 취수장 옆 배수로로 과세했으며, 본 시설은 급배수시설임(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해수펌프앞(SLP)앞 '집수조 및 취수로와 연결된 시설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정한 일시적 저장시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원고는 아무런 증빙없이 취수장에서 넘치는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집수조에 유입되는 해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사이펀계통설명과 부합되지 않고 특히 바다로 흘러보낸다면서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을제23호증1,2: 현황사진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수조가 아니라 배수로이므로 제외함.	0.00
	247	정화조	28.69	0.00	비과세대상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을제3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 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 을제59호증: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저장조 또는 기계장치로서 면적 산정에 포함함.	28.69
	248	저장조	241.40	0.00	불특정	특정이 필요함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41.40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249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148.94	148.94		다툼없음					148.94
	250	취수로	2,585.80	2,585.80		다툼없음					2,585.80
	251	순수탱크	346.19	346.19		다툼없음					346.19
	252	복합 일상폐수조	401.98	401.98		다툼없음					401.98
	253	오수정화조	108.00	108.00		다툼없음					108.00
	254	복합 함유폐수조	163.40	163.40		다툼없음					163.4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55	냉각수 배수관로 1	273.01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내지 3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해당함.	0.00
	256	냉각수 배수관로 2	511.57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내지 3			상동	0.00
	257	취수로	26,298.02	26,298.02		다툼없음							26,298.02
	258	취수로	3,060.74	3,060.74		다툼없음							3,060.74
	259	복수저장탱크	330.28	330.28		다툼없음							330.28
	260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307.72	307.72		다툼없음							307.72
	261	조절지 수조	304.00	304.00		다툼없음							304.00
	262	가압장 수조	317.00	317.00		다툼없음							317.00
	263	취수장 수조	50.00	50.00		다툼없음							50.00
	264	원수탱크B	2,147.20	2,147.20		다툼없음							2,147.20
	265	원수탱크D	6,358.50	6,358.50		다툼없음							6,358.50
	266	재활용수조	48.00	48.00		다툼없음							48.00
	267	염소저장조	14.12	14.12		다툼없음							14.12
	268	복합염산탱크	2.83	2.83		다툼없음							2.83
	269	염산저장탱크	33.46	33.46		다툼없음							33.46
	270	가성소다저장탱크	80.44	80.44		다툼없음							80.4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71	저회저장조	157.00	157.00		다툼없음					157.00
	272	비회저장조	562.80	562.80		다툼없음					562.80
	273	석고탈수탱크	54.00	54.00		다툼없음					54.00
	274	석회석일일저장조	28.00	28.00		다툼없음					28.00
	275	석회석슬러리탱크	46.50	46.50		다툼없음					46.50
	276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77	탈황비상저장탱크	165.00	165.00		다툼없음					165.00
	278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279	염기저장조	9.00	9.00		다툼없음					9.00
	280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1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282	복합소포제주입탱크	5.66	5.66		다툼없음					5.66
	283	취수로	13,775.00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 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6년도에 취득하였음.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7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284	냉각수 배수로 집수정	3,362.00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 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6년도에 취득하였음.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7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저장소,수조	285	냉각수 배수관로 (냉각수집수정)	409.05	0.00		급배수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어 수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제외함.	0
	286	취수장	5,081.23	0.00		급배수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수조 면적 469.47㎡, 취수장 구축물 면적 1,934.54㎡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함.	2,404.01
	287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냉각수취수장)	549.89	0.00		급배수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수조에 해당하므로 포함함.	549.89
	288	수조	1,164.3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 을제76호증6 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64.38
	289	저장조	1,475.6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772.29
	290	펌프실(2-1)(2-2)	30.2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16~17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0.21
	291	기력 LOSERVICE TANK	276.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47	상동	276.32
	292	CPI유수분리기	48.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0	상동	48.76
	293	콘크리트구조물	13.8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5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294	원수탱크D(2기중 미과세1기)	6,358.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3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95	복합유수분리기	309.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96	복합오폐수집수기	397.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97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2,64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222,223,304p 을제83호증 33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640.50
	298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40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406p 을제83호증 34	상동	400
	299	경유저장탱크	53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 을제83호증 35	상동	530.66
	300	원수저장탱크	2,098.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 을제83호증 36	상동	2,098.08
	301	1차침전조	1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02	1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3	2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4	3차반응탱크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5	1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6	1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7	2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의 근거 자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08	2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09	2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0	3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1	1차처리수조	62.7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2	압력여과기	3.7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3	활성탄여과기	12.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4	1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5	2차PH처리수조	4.9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6	불소흡착탑	6.2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7	2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8	방류수조	6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19	농축조	4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0	슬러지저장조	1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21	케이크호퍼	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2	세척수탱크	1.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3	황산알루미늄호퍼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4	탄산나트륨호퍼	2.5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5	용해주입탱크	5.3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6	호퍼공기저장탱크	0.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7	용해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8	길레이트주입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29	폴리머용해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0	폴리머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1	염산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2	염산가스실포트	0.1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3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3.1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34	치아염산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5	아황산용해탱크	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336	MXINGTANK	4.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112p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37	취수펌프장	37.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3p 을제83호증 3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7.50
	338	옹수저장탱크	1,017.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4p 을제83호증 38	상동	1,017.36
저유조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339	복합 DO Storage tank	1,118.10	1,118.10		다툼없음					1,118.10
	340	Clean&Dirty Oil tank	20.50	20.50		다툼없음					20.50
	341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88.20	88.20		다툼없음					88.20
	342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88.00	88.00		다툼없음					88.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출력일시 : 2017-08-23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공작물	343	7,8호기 컨베이어설비	34,155.78	0.00	비과세대상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 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축조 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 면적이 미산정됨.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 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 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 (2007-427)	1. 7,8호기 컨베이어설비 10,485.2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 23,670.56㎡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이므로 포함하되, 다만 을 제24호증의 2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하단컨베이어설비 등은 같은 지점의 상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설비와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343-1)' 기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공제하고, 또한 갑가 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 참고(순번343-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추가 공제한 면적인 21,346.98㎡만 인정함.	21,346.98
	344	채광창	280.50	0.00	비과세대상	건물의 부속시설임		건축법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높이 1m이상으로 해당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요건에 적합하여 별도의 면적산출 대상임.	을제36호증7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345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2,944.14	0.00	기과세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을제32호증6내지18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2,944.14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346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2,076.80	2,076.80		다툼없음					2,076.80
	347	SCW PIPE	256.00	256.00		다툼없음					256.00
	348	급수탱크관련송수관	691.75	691.75		다툼없음					691.75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49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19.18	19.18		다툼없음					19.18
	350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835.00	835.00		다툼없음					835.00
	351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352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3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354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1.00	31.00		다툼없음					31.00
	355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389.00	389.00		다툼없음					389.00
	356	취수장옆 HUME PIPE	2.57	2.57		다툼없음					2.57
	357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1,106.09	1,106.09		다툼없음					1,106.09
	358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768.00	768.00		다툼없음					768.00
	359	CWP PIPE(CWP~보일러건물)	3,840.00	3,840.00		다툼없음					3,840.00
	360	수처리 건물 관련	2.04	2.04		다툼없음					2.04
	361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0.39	0.39		다툼없음					0.39
	362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15,750.00	15,750.00		다툼없음					15,750.00
송구관	363	냉각수 심층배수로	1,592.00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고, 본 시설은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6년도 취득 하였으며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34	수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64	CWP 취수관로 (CWP~보일러건물)	2,295.52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6년도 취득함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34 내지 35	상동	0
	365	취수관로	902.00	0.00		취수관로가 아니라 배수관로임.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2007은 비과세대상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4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외함.	0
	366	옥외소화관	2,932.8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가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을제61호증 1내지 11 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 을제83호증 3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932.88
	367	공업용수도수관	150.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224p 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68	공업용수유공관	143.0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1283p 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상동	0.00
	369	재순환수관	2,847.2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311p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 을제83호증 4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0	전처리배관 (강관,PEM 수도관)	1,08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783p 을제83호증 41	상동	0.00
	371	애쉬라인	4,3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 을제83호증 42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372	폐수배관	13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73	회이송관련관	1,857.1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 을제83호증 43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회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임)	0.00
	374	섬프펌프관련관	1.2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6p 을제83호증 44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5	송수관 (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1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76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1,58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IV 16-4p *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상동	0
	377	경유배관	792.00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갑가 제80호증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을제32호증2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78	1부두경유배관	4.95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을제32호증3B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79	도관(회이송관)	3,486.88	0.00	기과세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갑가제3호증의3 16면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을제32호증53내지57 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380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9.00	9.00		다툼없음					9.00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및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유관 및 도관	381	경유저장탱크송유관	3.50	3.50		다툼없음					3.50
	382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83	연료공급실송유관	41.20	41.20		다툼없음					41.20
	384	오일탱크관련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85	LO SERVICE PUMP TO BOILER	24.36	24.36		다툼없음					24.36
	386	LO SERVICE PUMP TO BOILER	3.57	3.57		다툼없음					3.57
	387	LO SERVICE PUMP TO BOILER	0.59	0.59		다툼없음					0.59
	388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2.03	2.03		다툼없음					2.03
	389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2.00	2.00		다툼없음					2.00
	390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38.58	38.58		다툼없음					38.58
	391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60	1.60		다툼없음					1.60
	392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38.56	138.56		다툼없음					138.56
	393	LO SERVICE PUMP TO BOILER	59.78	59.78		다툼없음					59.7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근거 규정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94	LO SERVICE PUMP TO BOILER	45.57	45.57		다툼없음							45.57
	395	도관시설	13,905.19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송유관, 송수관에 해당하지 않고, 7,8호기 도관1,24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3,893.69
	396	중유이송배관	77.83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806p *2013년 폐기시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397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	21,024.50	0.00	비과세대상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은 2008년도 취득 시설임.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지436)에서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면적에 포함하도록 심판결정. 따라서, 7,8호기 최초 점화일이 2007.11.14일이므로 2007년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최초점화일 이전인 2006년도에 임시사용 등을 받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도 포함되어야 함.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 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398	콘크리트 대지	105.91	0.00	비과세대상	특정이 필요함. 콘크리트 대지는 비과세대상		지하기계실의 지붕으로 건축물로 확인되어 당초'수조'에서 건축물로 정정함.	을제56호증1내지3: 건축물 입증 및 지하1,2층 사진			피고 제출 증거로 건축물로 특정됨.	105.91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399	#1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00	#1 보조보일러제어실	212.15	212.15		다툼없음							212.15
	401	#1 비최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02	#1 사일로 전원실	52.00	52.00		다툼없음							5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03	#1 외부화장실-2호기 뒤	7.28	7.28		다툼없음					7.28
	404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405	#1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06	#1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407	#1,2 물처리실	1,260.80	1,260.80		다툼없음					1,260.80
	408	#1,2 사워장	395.18	395.18		다툼없음					395.18
	409	#1,2 유지창고	350.00	350.00		다툼없음					350.00
	410	#2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411	#2 비회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412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413	#2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14	#2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415	#2 보조보일러전원실	102.48	102.48		다툼없음					102.48
	416	#3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17	#3 서비스가스창고-1	28.00	28.00		다툼없음					28.00
	418	#3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19	#3 집진기 NO-1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20	#3 집진기 NO-2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21	#3,4 질소가스창고	74.00	74.00		다툼없음					74.00
	422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26,945.48	26,945.48		다툼없음					26,945.48
	423	#3,4 연료조질펌프실	0.00	0.00		다툼없음					0.00
	424	#3~6 물처리건물	2,865.87	2,865.87		다툼없음					2,865.87
	425	#4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26	#4 서비스가스창고-2	28.00	28.00		다툼없음					28.00
	427	#4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428	#4 집진기 NO-3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29	#4 집진기 NO-4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30	#5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31	#5 서비스가스창고-3	28.00	28.00		다툼없음					28.00
	432	#5 집진기 NO-5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33	#5 집진기 NO-6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34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26,096.71	26,096.71		다툼없음					26,096.71
	435	#6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436	#6 서비스가스창고-4	28.00	28.00		다툼없음					28.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37	#6 집진기 NO-7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38	#6 집진기 NO-8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439	(산업폐기물)저장창고	141.12	141.12		다툼없음					141.12
	440	(종묘)배양장창고	96.00	96.00		다툼없음					96.00
	441	가스창고-#2호기옆	24.00	24.00		다툼없음					24.00
	442	가스창고-2화학부옆	5.76	5.76		다툼없음					5.76
	443	가스창고-2화학부옆	7.92	7.92		다툼없음					7.92
	444	가스창고-고압	150.00	150.00		다툼없음					150.00
	445	간이초소 NO-1	5.76	5.76		다툼없음					5.76
	446	간이초소 NO-2	5.76	5.76		다툼없음					5.76
	447	간이초소 NO-3	5.76	5.76		다툼없음					5.76
	448	간이초소 NO-4	5.76	5.76		다툼없음					5.76
	449	경비실(구정문수위실)	0.00	0.00		다툼없음					0.00
	450	경비실(신축)	351.25	351.25		다툼없음					351.25
	451	(구)종합사무실	4,500.59	4,500.59		다툼없음					4,500.59
	452	기상관측소	7.29	7.29		다툼없음					7.29
	453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72.00	72.00		다툼없음					7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54	망루(신축)	9.91	9.91		다툼없음					9.91
	455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56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57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58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59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60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61	망루1형	12.35	12.35		다툼없음					12.35
	462	모의제어반	1,569.86	1,569.86		다툼없음					1,569.86
	463	무기고	66.96	66.96		다툼없음					66.96
	464	배양장	562.50	562.50		다툼없음					562.50
	465	벙커	7.20	7.20		다툼없음					7.20
	466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18.56	18.56		다툼없음					18.56
	467	복합#1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68	복합#1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69	복합#1 스팀터빈-1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470	복합#1,2 질소가스창고-1	25.97	25.97		다툼없음					25.97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71	복합#2 가스터빈건물_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72	복합#2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73	복합#2 스팀터빈-1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474	복합#3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475	복합#3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76	복합#3 스팀터빈-2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477	복합#3,4 질소가스창고-2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78	복합#4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479	복합#4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80	복합#4 스팀터빈-2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481	복합#5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482	복합#5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83	복합#5,6 질소가스창고-3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84	복합#6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485	복합#6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86	복합#7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87	복합#7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88	복합#7,8 질소가스칭고-4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89	복합#8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90	복합#8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91	복합 경비실	57.86	57.86		다툼없음					57.86
	492	복합 공기압축기실 및비상발전기실	245.58	245.58		다툼없음					245.58
	493	복합 급수펌프실	76.78	76.78		다툼없음					76.78
	494	복합 망루-1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95	복합 망루-2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96	복합 말루-3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97	복합 망루-4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98	복합 망루-5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99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92.81	92.81		다툼없음					92.81
	500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204.52	204.52		다툼없음					204.52
	501	복합 염소주입실	252.58	252.58		다툼없음					252.58
	502	복합 유지창고	365.06	365.06		다툼없음					365.06
	503	복합 종합창고	3,178.84	3,178.84		다툼없음					3,178.84
	504	복합 주제어건물-1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근거 감정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건축물	505	복합 주제어건물-2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506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173.05	173.05		다툼없음					173.05
	507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17.50	17.50		다툼없음					17.50
	508	부두접안정보실	15.12	15.12		다툼없음					15.12
	509	분석실가스저장고	17.64	17.64		다툼없음					17.64
	510	산소저장창고	35.00	35.00		다툼없음					35.00
	511	상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512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55.50	55.50		다툼없음					55.50
	513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11.00	11.00		다툼없음					11.00
	514	석탄분쇄실 1	802.75	802.75		다툼없음					802.75
	515	석탄분쇄실 2	814.00	814.00		다툼없음					814.00
	516	석탄하역건물	135.00	135.00		다툼없음					135.00
	517	소각로	259.18	259.18		다툼없음					259.18
	518	소화수및원수펌프실	380.25	380.25		다툼없음					380.25
	519	송유및소화수펌프실	383.00	383.00		다툼없음					383.00
	520	순환수보조펌프실	299.75	299.75		다툼없음					299.75
	521	연료유공급펌프실	715.00	715.00		다툼없음					715.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정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자료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22	연료유펌프실-#1,2호기	724.72	724.72		다툼없음					724.72
	523	염소주입실	622.16	622.16		다툼없음					622.16
	524	온배수양식동	504.00	504.00		다툼없음					504.00
	525	온배수양식장펌프실	21.60	21.60		다툼없음					21.60
	526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45.00	45.00		다툼없음					45.00
	527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5.30	5.30		다툼없음					5.30
	528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7.93	7.93		다툼없음					7.93
	529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7.15	7.15		다툼없음					7.15
	530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6.37	6.37		다툼없음					6.37
	531	응천 가압장	162.00	162.00		다툼없음					162.00
	532	응천 사택	43.65	43.65		다툼없음					43.65
	533	유류가압펌프실	336.00	336.00		다툼없음					336.00
	534	유연탄작업관리실	694.02	694.02		다툼없음					694.02
	535	유연탄하역조정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536	입하탄시료채취실	287.10	287.10		다툼없음					287.10
	537	정문경비실	64.04	64.04		다툼없음					64.04
	538	정비고	611.00	611.00		다툼없음					611.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39	조탄실	147.11	147.11		다툼없음					147.11
	540	조탄실	253.52	253.52		다툼없음					253.52
	541	조탄실 1	140.00	140.00		다툼없음					140.00
	542	조탄실 2	301.75	301.75		다툼없음					301.75
	543	조탄실 3	414.40	414.40		다툼없음					414.40
	544	조탄실 4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545	조탄실 5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46	조탄실 6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547	조탄실 NO-1	257.57	257.57		다툼없음					257.57
	548	조탄실 NO-10	116.80	116.80		다툼없음					116.80
	549	조탄실 NO-2	256.26	256.26		다툼없음					256.26
	550	조탄실 NO-3	269.68	269.68		다툼없음					269.68
	551	조탄실 NO-4	85.08	85.08		다툼없음					85.08
	552	조탄실 NO-5	85.85	85.85		다툼없음					85.85
	553	조탄실 NO-6	127.07	127.07		다툼없음					127.07
	554	조탄실 NO-7	1,143.42	1,143.42		다툼없음					1,143.42
	555	조탄실 NO-8	1,598.88	1,598.88		다툼없음					1,598.8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56	조탄실 NO-9	398.23	398.23		다툼없음					398.23
	557	식당/강당	1,537.54	1,537.54		다툼없음					1,537.54
	558	(종합)사무실	6,900.23	6,900.23		다툼없음					6,900.23
	559	종합창고	7,144.22	7,144.22		다툼없음					7,144.22
	560	주산 사택	55.72	55.72		다툼없음					55.72
	561	주산 취수장	161.00	161.00		다툼없음					161.00
	562	질소가스저장실	34.76	34.76		다툼없음					34.76
	563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564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565	초소2형	18.83	18.83		다툼없음					18.83
	566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67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68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69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70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71	콘테이너하우스	36.00	36.00		다툼없음					36.00
	572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73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74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75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76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155.15	155.15		다툼없음					155.15
	577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2,072.90	2,072.90		다툼없음					2,072.90
	578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1,440.00	1,440.00		다툼없음					1,440.00
	579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1,152.00	1,152.00		다툼없음					1,152.00
	580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512.00	512.00		다툼없음					512.00
	581	탈황설비 앨브이 (LV)-02	145.54	145.54		다툼없음					145.54
	582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1	2,538.00	2,538.00		다툼없음					2,538.00
	583	탈황설비 주제어동	2,234.75	2,234.75		다툼없음					2,234.75
	584	탈황설비 티티(TT)-01	107.39	107.39		다툼없음					107.39
	585	탈황설비 티티(TT)-02	313.57	313.57		다툼없음					313.57
	586	탈황설비 티티(TT)-03	156.81	156.81		다툼없음					156.81
	587	탈황설비 티티(TT)-04	417.29	417.29		다툼없음					417.29
	588	탈황설비 티티티(TTT)-01	595.92	595.92		다툼없음					595.92
	589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1,575.23	1,575.23		다툼없음					1,575.23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90	트랜스퍼타워 18	217.18	217.18		다툼없음					217.18
	591	트랜스퍼타워 19	224.71	224.71		다툼없음					224.71
	592	트랜스퍼타워 20	1,323.18	1,323.18		다툼없음					1,323.18
	593	트랜스퍼타워 21	226.19	226.19		다툼없음					226.19
	594	폐기물저장창고	230.67	230.67		다툼없음					230.67
	595	폐수처리건물	546.83	546.83		다툼없음					546.83
	596	폐수처리관리실	206.36	206.36		다툼없음					206.36
	597	해수소화펌프실	25.39	25.39		다툼없음					25.39
	598	해수인양펌프조작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599	홍보관	340.20	340.20		다툼없음					340.20
	600	홍보관 화장실	57.40	57.40		다툼없음					57.40
	601	회처리순환수펌프실	95.20	95.20		다툼없음					95.20
	602	회처리순환수펌프실	408.00	408.00		다툼없음					408.00
	603	화처리전원실	67.51	67.51		다툼없음					67.51
	604	회처리펌프제어실	23.80	23.80		다툼없음					23.80
	605	후문경비실	54.98	54.98		다툼없음					54.98
	606	석탄취급설비 제어실 증축	0.00	0.00		다툼없음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07	오수처리펌프실	36.21	36.21		다툼없음					36.21
	608	저탄장 살수펌프 건물	180.00	180.00		다툼없음					180.00
	609	석탄취급 전기실 및 정비원 후생건물	664.47	664.47		다툼없음					664.47
	610	중수처리 건물	869.80	869.80		다툼없음					869.80
	611	총질소 제거건물	659.20	659.20		다툼없음					659.20
	612	방카	7.20	7.20		다툼없음					7.20
	613	분진측정실	32.00	32.00		다툼없음					32.00
	614	망루	7.92	7.92		다툼없음					7.92
	615	경비실	10.00	10.00		다툼없음					10.00
	616	탈황 #3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17	탈황 #3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18	탈황 #4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19	탈황 #4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20	탈황 #5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21	탈황 #5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622	탈황 #6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623	탈황 #6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624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132.19	132.19		다툼없음					132.19
	625	기타건물	7,990.7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많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18호증 1내지3 을제36호증 1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컨테이너등(을제18호증2) 중 순번 24-26 기재 건물 1,764.96㎡, 설비배관실 102.86㎡, 전기실 215.1㎡, 제어실 215.1㎡(각 을제18호증1) 합계 2,298.02㎡는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특정 인정	5,692.70
합계			**3,694,243.19**	**451,327.05**							**459,981.6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3-1)

컨베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BC12AB하단(B,C)	124.16	89.6	7 *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전부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343-2)

컨베이어설비명	피고 면적	오류 내용	인정 면적	차이
BC43A/B의 A	1,142.10	수평투영 오류	1,057.50	84.6
BC4A/B	827.51	상동	788.5	39.01
BC22	397.59	상동	365.6	31.99
BC23	391.5	상동	360	31.5
BC12A/B의 A	2,071.30	상동	1,770.23	301.07
BC61	531.81	상동	467.4	64.41
BC62	330.72	상동	300.3	30.42
BC63	396.4	상동	328	68.4
BC64 컨베이어	402.3	상동	346.5	55.8
BC66A/B	598.98	상동	475.7	123.28
BC53A/B의 C	988.22	상동	904.62	83.6
BC40A/B의 A	2,302.30	상동	1,995	307.3
BC33A/B	973.44	합계 오류	802.42	171.02
BC32A/B	775.96	합계 오류	664.48	111.48
			합계	1503.8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5 20 연면적 산정표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	석회석부두		0.00				2007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2	물양장		0.00				상동			
	3	호 안		0.00				상동			
	4	케이블터널		0.00				상동			
	5	케이블보호철판		0.00				상동			
	6	EDB 맨홀		0.00				상동			
	7	케이블 트레이		0.00				상동			
	8	EDB 맨홀		0.00				상동			
	9	케이블시설		0.00				상동			
	10	케이블트레이및전선관		0.00				상동			
	11	취수장케이블트레이		0.00				상동			
	12	취수장케이블트레이		0.00				상동			
	13	CWP 케이블트레이		0.00				상동			
	14	옹벽 1,2,3		0.00				상동			
	15	옹벽24		0.00				상동			
	16	옹벽25-27		0.00				상동			
	17	옹벽28-30		0.00				상동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18	옹벽 31,32		0.00				상동				
	19	옹벽34-1,34-2,54~56		0.00				상동				
	20	옹벽57,58		0.00				상동				
	21	옹벽59~62		0.00				상동				
	22	옹벽63		0.00				상동				
	23	옹벽11		0.00				상동				
	24	옹벽17		0.00				상동				
	25	옹벽64~66		0.00				상동				
	26	2부두Air라인		0.00				상동				
	27	스팀관		0.00				상동				
	28	스팀관		0.00				상동				
	29	법면		0.00				상동				
	30	CWP 옆 구조물		0.00				상동				
	31	POND(연못)		0.00				상동				
	32	공업용수저수지		0.00				상동				
	33	남부회처리장		0.00				상동				
	34	북부회처리장		0.00				상동				
	35	다툼없는 면적						상동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원심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36	다툼없는 내부도로						상동			
	37	다툼 없는 주차장						상동			
	38	다툼 없는 가스관						상동			
	39	다툼 없는 복개시설						상동			
급배수시설	40	스팀배관맨홀		0.00				상동			
	41	우수맨홀		0.00				상동			
	42	우수맨홀		0.00				상동			
	43	우수배수로		0.00				상동			
	44	1~8호기 연돌면적	3,748.18	0.00	비과세대상	※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 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 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 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매뉴얼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8,957.22에서 3,748.18로 면적 정정	연돌은 기계장치인 보일러의 필수적인 부대설비임을 인정.다만,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7, 8호기 연돌면적 부분398.02㎡를 제외한 3,350.16㎡ 만 인정	3350.16
	45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3,320.64	0.00	기과세, 비과세대상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 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 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1호증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을제27호증7내지11 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 사진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320.6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6	예비변압기	224.00	0.00	비과세대상	1. 야적된 자재임.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9호증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을제31호증101 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224.00
	47	연소용공기유입구	761.76	0.00	비과세대상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갑가제65호증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 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을제31호증80 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61.76
	48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8,245.23	0.00	특정필요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송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 을제33호증55 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 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 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구조물 13.82㎡(을제33호증의55)는 콘크리트 구축물로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나머지는 기계장치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5,870.51
	49	기계장치	18.94	0.00	비과세대상	회사소유 시설물 아님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을제31호증36 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50	송풍구	2.85	0.00	기과세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2호증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44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51	취수장내기계장치	21.84	0.00	기과세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 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을제31호증6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2	HRSG	644.00	30.00	면적산출오류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 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6호증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644
	53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 백필터	116.92	0.00	기과세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 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갑가제67호증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95,96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116.92
	54	증기배출구	745.82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갑가제68호증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을제31호증99,100 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 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745.82
	55	환풍구	168.48	0.00	비과세대상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 을제31호증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28
	56	내부공기배출구	328.56	0.00	비과세대상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을제31호증106,107,108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328.56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57	취수펌프시설지역	1,392.93	1,392.93		다툼없음					1,392.93
	58	CWP STRUCTURE	960.00	960.00		다툼없음					96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9	CWP크레인	392.70	392.70		다툼없음					392.70
	60	SLP크레인	896.04	896.04		다툼없음					896.04
	61	SLP크레인 레일	15.20	15.20		다툼없음					15.20
	62	CWP 크레인 레일	65.80	65.80		다툼없음					65.80
	63	복합연소용필터	39.25	39.25		다툼없음					39.25
	64	복합연돌	158.50	158.50		다툼없음					158.50
	65	복합주변압기	257.44	257.44		다툼없음					257.44
	66	복합 HRSGSUMP	33.00	33.00		다툼없음					33.00
	67	복합 GT7.8 변압기	37.72	37.72		다툼없음					37.72
	68	복합경유가압펌프	91.00	91.00		다툼없음					91.00
	69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69.00	69.00		다툼없음					69.00
	70	취수펌프시설	3,260.07	3,260.07		다툼없음					3,260.07
	71	CWP STRUCTURE	2,652.00	2,652.00		다툼없음					2,652.00
	72	석회석이송탑(TT01)	33.00	33.00		다툼없음					33.00
	73	석회석이송탑(TT02)	80.00	80.00		다툼없음					80.00
	74	석회석이송탑(TT03)	34.65	34.65		다툼없음					34.65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소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75	석회석이송탑(TT04)	39.00	39.00		다툼없음					39.00
	76	석회석이송설비(LP01)	485.56	485.56		다툼없음					485.56
	77	석회석이송설비(LP02)	720.38	720.38		다툼없음					720.38
	78	석회석이송설비(LP03)	1,058.68	1,058.68		다툼없음					1,058.68
	79	석회석이송설비(LP04)	129.35	129.35		다툼없음					129.35
	80	해수가압펌프	72.00	72.00		다툼없음					72.00
	81	변압기	2,048.66	2,048.66		다툼없음					2,048.66
	82	기동변압기	261.66	261.66		다툼없음					261.66
	83	탈황기동변압기	7.79	7.79		다툼없음					7.79
	84	탈황보조변압기	1,884.90	1,884.90		다툼없음					1,884.90
	85	CWP 크레인 레일	90.47	90.47		다툼없음					90.47
	86	크레인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87	크레인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88	상탄기	672.00	672.00		다툼없음					672.00
	89	상탄기	448.00	448.00		다툼없음					448.00
	90	석탄하역기	1,250.00	1,250.00		다툼없음					1,25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계장치	91	석탄하역기	1,136.00	1,136.00		다툼없음					1,136.00	
	92	상탄기레일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93	상탄기레일	339.20	339.20		다툼없음					339.20	
	94	석탄하역기레일	73.90	73.90		다툼없음					73.90	
	95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 기초)	22,539.00	22,539.00		다툼없음					22,539.00	
	96	CWP 구조물	572.89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6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 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97	CWP 구조물	572.89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98	변압기(주 변압기)	861.25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99	변압기(소내 변압기)	264.5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0	변압기(여자용 변압기)	155.25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1	변압기(기동용 변압기)	183.96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2	연돌	280.55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3	상탄기	448.0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4	상탄기 레일	170.56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분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05	저탄장내컨베이어(BC-73)	5,071.00	0.00		상동. S/R면적과 중복		상동	상동	상동	0
	106	저탄장내컨베이어(BC-74)	5,071.0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7	석회석 이송설비	2,625.80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상동	상동	상동	0
	108	석회석 이송설비	824.0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09	석회석 이송설비	75.1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10	석회석 이송설비	18.92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11	석회석 이송설비	32.98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12	석회석 이송설비	5.3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13	석회석 이송설비	58.5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114	고전압시설	177.12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1호증 81내지82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177.12
	115	가스장치	402.4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1내지8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02.48
	116	복합변압기	825.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상동	825
	117	DUST COLLECTOR SYSTEM(24기)	5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상동	586.56
	118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89.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96	이 목록 순번 5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기재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19	수문	74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피고 제출 증거(을 제60호증의 9)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32.2m×23m) 인정. 기계장치이므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함됨.	740.60
	120	복합HRSG	3,19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196
	121	HP Drum	153.4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이 목록 순번 120번 기재 복합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0
	122	IP Drum	6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상동	0
	123	LP Drum	62.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상동	0
	124	저장지역연료유썸프	1.4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44
	125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26	First stage Mist Eliminnator	671.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27	Second stage Mist Eliminnator	1,007.2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상동	0
	128	Booster Fan Innet Danper	184.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29	Booster Fan Outlet Danper	255.3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상동	0	
	130	Energency Danper	130.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상동	0	
	131	Fgd Fan Outlet Danper	141.1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상동	0	
	132	가스히터	864.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상동	0	
	133	여과수썸프	118.5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상동	0	
	134	계량대	3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거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0	
	135	전기집진기	10,37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이 목록 순번 346, 354,0359 내지 361, 368 내지 370, 373, 374, 378, 379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36	가스절연발전소	1,20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204	
	137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5,983.5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38	AIR PREHEATER INETDAMEER	286.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139	Expansion Joint	302.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득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40	오폐수처리장기계실	205.5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57호증 1내지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05.57
	141	Scr탈질설비구조물	4,7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상동	4,752.00
	142	7.8호기송풍기	10.1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44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143	7.8호기펌프시설	7.1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46	상동	0
	144	7.8호기유인통풍기	2,360.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84	상동	0
	145	7,8호기345KV 옥외변전설비	3,50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1호증 97	상동	0
	146	공기압축기	20.3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295P 을제83호증 45	상동	0
	147	control BLDG Water chilers	15.4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306P 을제83호증 46	상동	0
	148	Air handling unit	127.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307P 을제83호증 47	상동	0
	149	촉매,촉매반응기	423.2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394P 을제83호증 48	상동	0
	150	저회 2ROll Crusher	19.6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877P 을제83호증 49	상동	0
	151	공기예열기	2,228.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용역보고서1-10P 을제83호증 50	상동	0
	152	연속식하역기	64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기기설치지침서(1)4-20P 을제83호증 51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53	침전분리조1.2실	111.7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오수처리장준공도서 을제83호증 52	상동	0
	154	접촉폭기조1.2실	93.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오수처리장준공도서 을제83호증 53	상동	0
	155	7.8호기집진기	3,163.6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 271,272P 을제83호증 54	상동	0
	156	냉각수심층취수구	5,245.30	0.00	비과세대상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급배수 시설은 2006년부터 과세대상 아님. 냉각수 심층취수구는 해수취스펌프 전방에 위치해 해수펌프로 들어오는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바다속에 사각형의 터널로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구조물(수조)가 아님.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갑가제8호증, 갑가제21호증의 1,2,3	냉각수심층취수구는 유입흡수구와 유입수로 및 집수조가 한 구조로 시설되어 있고 유입흡수구는 취수로보다 3m높게 시설하여 저장기능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고는 설계서를 달리 설명하고 있음. 또한, 행자부심사결정에서도 화력발전소 취수로는 "큰통의 해수저장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을제3호증2: 심층취수구설계도면 을제22호증1내지2: 설계도면 및 계통도 참고자료5: 냉각수이용방법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참고자료14-1,14-2: 행자부심사결정서 (99-212호,2001-97호)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0
	157	7,8호기냉각수배수관로(소수력댐 및 기계장치)	4,555.58	0.00	비과세대상	- 수조가 아님.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 본 시설은 2008년에 취득한 시설임		7,8호기 냉각수 배수계통은 관로와 소수력발전댐 및 기계장치인 소수력터빈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원고는 관로시설만 있는것으로 주장.위 현황에 따라 관로는 급배수 시설로, 댐시설(기계장치포함)은 '수조"로 구분하여 면적산출함.	을제29호증1,2: 소수력발전댐시설 참고자료12: 배수관로 현황사진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158	복합발전 취수장옆배수로	162.64	0.00	비과세대상	피고가 복합발전 취수장 옆 배수로로 과세했으며, 본 시설은 급배수시설임(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해당 시설은 저장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수조가 아니라 배수로이며, 배출구도 존재함(갑가 제78호증의 1,2). 취수구를 통해 냉각용 해수를 취수한 후, 발전계통을 순환한 뒤에 물양장 옆에 위치한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배출함(이를 온배수라고 함)	갑가제10호증, 갑가제23호증, 갑가제35호증, 갑가제78호증의 1,2	해수펌프앞(SLP)앞 '집수조 및 취수로와 연결된 시설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정한 일시적 저장시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원고는 아무런 증빙없이 취수장에서 넘치는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집수조에 유입되는 해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사이펀계통설명과 부합되지 않고 특히 바다로 흘러보낸다면서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을제23호증1,2: 현황사진 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수조가 아니라 배수로이므로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59	정화조	28.69	0.00	비과세대상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 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 을제59호증: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저장조 또는 기계장치로서 면적 산정에 포함함.	28.69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160	심층취수로	1,351.48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0
	161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549.89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수조에 해당하므로 면적 산정에 포함함.	549.89
	162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148.94	148.94		다툼없음					5,245.30
	163	취수장 옆 배수로	162.64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수조가 아니라 배수로이므로 제외함.	0
	164	취수로	2,585.80	2,585.80		다툼없음					2,585.80
	165	순수탱크	346.19	346.19		다툼없음					346.19
	166	복합 일상폐수조	401.98	401.98		다툼없음					401.98
	167	오수정화조	108.00	108.00		다툼없음					108.00
	168	복합 함유폐수조	163.40	163.40		다툼없음					163.40
	169	냉각수 배수관로 1	273.01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내지 3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해당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70	냉각수 배수관로 2	511.57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내지 3	상동	0
	171	염소저장조	14.12	14.12		다툼없음					14.12
	172	복합염산탱크	2.83	2.83		다툼없음					2.83
	173	복합소포제 주입탱크	5.66	5.66		다툼없음					5.66
	174	염산저장탱크	33.46	33.46		다툼없음					33.46
	175	가성소다저장탱크	80.44	80.44		다툼없음					80.44
	176	저회저장조	157.00	157.00		다툼없음					157.00
	177	비회저장조	562.80	562.80		다툼없음					562.80
	178	석고탈수탱크	54.00	54.00		다툼없음					54.00
	179	석회석일일저장조	28.00	28.00		다툼없음					28.00
	180	석회석슬러리탱크	46.50	46.50		다툼없음					46.50
	181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182	탈황비상저장탱크	165.00	165.00		다툼없음					165.00
	183	석회석저장사일로	181.30	181.30		다툼없음					181.30
	184	염기저장조	9.00	9.00		다툼없음					9.00
	185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186	염기및산저장탱크	26.40	26.40		다툼없음					26.4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피고		내용	인정 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187	냉각수 배수관로	409.05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해당함.	0
	188	심층취수로입구 (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221.76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0
	189	심층취수관로 (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3,672.06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0
	190	취수장	5,081.23	0.00		급배수 시설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수조 면적 469.47㎡, 취수장 구축물 면적 1,934.54㎡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함.	2,404.01
	191	취수로	26,298.02	26,298.02		다툼없음					26,298.02
	192	취수로	3,060.74	3,060.74		다툼없음					3,060.74
	193	복수저장탱크	330.28	330.28		다툼없음					330.28
	194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307.72	307.72		다툼없음					307.72
	195	조절지 수조	304.00	304.00		다툼없음					304.00
	196	가압장 수조	317.00	317.00		다툼없음					317.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197	취수장 수조	50.00	50.00		다툼없음					50.00	
	198	원수탱크B	2,147.20	2,147.20		다툼없음					2,147.20	
	199	원수탱크D	6,358.50	6,358.50		다툼없음					6,358.50	
	200	재활용수조	48.00	48.00		다툼없음					48.00	
	201	취수로	13,775.00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7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 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202	냉각수 배수로 집수정	3,362.0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3	석고탈수공급탱크	234.54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4	7.8호기 순수저장탱크	277.45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5	7호기복수저장탱크	38.47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6	8호기복수저장탱크	38.47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득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저장소, 수조	207	비회저장조	282.91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8	ASH WATER MACE UP TANK	44.16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09	ASH Tramsfer Tank	50.24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10	LIMESTONE STORAGE SILO(석회석 사일로)	1,251.3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11	LIMESTONE STORAGE SILO(석회석 사일로)	1,251.30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212	수조	1,164.3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3호증1~8, 20~23, 44, 52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164.38
	213	저장조	1,475.6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 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772.29
	214	펌프실(2-1)(2-2)	30.2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16~17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0.21
	215	기력 LOSERVICE TANK	276.3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47	상동	276.3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16	CPI유수분리기	48.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0	상동	48.76
	217	콘크리트구조물	13.82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55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218	복합유수분리기	309.8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219	복합오폐수집수기	397.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1	상동	0
	220	폐수집수조 (abnormal,normal)	40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406p 을제83호증 34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400
	221	경유저장탱크	530.6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 을제83호증 35	상동	530.66
	222	원수저장탱크	2,098.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 을제83호증 36	상동	2,098.08
	223	1차침전조	1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224	1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25	2차반응탱크	1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26	3차반응탱크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27	1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4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및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28	1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29	2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0	2차체류조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1	2차응집탱크	9.6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2	3차침전조	56.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5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3	1차처리수조	62.7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4	압력여과기	3.7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5	활성탄여과기	12.5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6	1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7	2차PH처리수조	4.9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6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8	불소흡착탑	6.2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39	2차PH조정조	4.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득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40	방류수조	66.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1	농축조	42.2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7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2	슬러지저장조	1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3	케이크호퍼	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4	세척수탱크	1.7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5	황산알루미늄호퍼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6	탄산나트륨호퍼	2.5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8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7	용해주입탱크	5.3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8	호퍼공기저장탱크	0.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49	용해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0	길레이트주입탱크	0.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09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1	폴리머용해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52	폴리머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3	염산주입탱크	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4	염산가스실포트	0.1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5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3.14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6	치아염산탱크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 310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7	아황산용해탱크	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112p 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상동	0.00	
	258	MXINGTANK	4.8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112p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259	취수펌프장	37.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3p 을제83호증 37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37.50	
	260	용수저장탱크	29.6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4호기설계계산서11-14p 을제83호증 38	상동	1,017.36	
	261	7.8호기수조	58.0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31, 32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0	
	262	7.8호기저장조	1,527.9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33내지41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0	
	263	지하저장조	105.91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46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105.9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64	저장조(기력1-6호기)	241.4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3호증60	상동	241.4
	265	7.8호기ASH AUX HOPPER	19.2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268,269p 을제83호증 55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0
	266	7.8호기ASHWATER TANK	44.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270p 을제83호증 56	상동	0
	267	7.8호기압력여과기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390p 을제83호증 57	상동	0
	268	7.8호기활성탄여과기	6.1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391p 을제83호증 58	상동	0
저유조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269	복합 DO Storage tank	1,118.10	1,118.10		다툼없음					1,118.10
	270	Clean&Dirty Oil tank	20.50	20.50		다툼없음					20.50
	271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88.20	88.20		다툼없음					88.20
	272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88.00	88.00		다툼없음					88.00
	273	7.8호기TBN Main Lube oil 탱크	21.45		불특정	피고 제출 증거로는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905p 을제83호증 59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0
	274	7.8호기TBN Clean oil Storage	31.42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건설지905p 을제83호증 60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공작물	275	7,8호기 컨베이어설비	34,155.78	0.00	비과세대상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 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 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 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 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 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2007-427)	1. 7,8호기 컨베이어설비 10,485.2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 23,670.56㎡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이므로 포함하되, 다만 을 제24호증의 2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하단컨베이어설비 등은 같은 지점의 상단에 설치된 컨베이어설비와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275-1)' 기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공제하고, 또한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 275-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추가 공제한 면적인 21,346.98㎡만 인정함.	21,346.98
	276	채광창	280.50	0.00	비과세대상	건물의 부속시설임		건축법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높이 1m이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요건에 적합하여 별도의 면적산출 대상임.	을제36호증7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다툼없는 공작물 면적 특정내역										
	277	채광창(건축물에서 이관 정정)	280.5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6호증7 참고자료16:지방세해설자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278	컨베이어설비(누락분추가)	138.88		불특정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피고 준비서면2011.08.22자 14면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79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2,944.14	0.00	기과세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을제32호증6내지16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2,944.14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280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2,076.80	2,076.80		다툼없음					2,076.80
	281	취수관로	902.00	0.00		취수관로가 아니라 배수관로임.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 2007은 비과세대상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4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외함.	0
	282	취수관로	3,351.92	0.00		복합 급배수시설 배수관로로 과세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4	상동	0
	283	SCW PIPE	256.00	256.00		다툼없음					256.00
	284	급수탱크관련송수관	691.75	691.75		다툼없음					691.75
	285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19.18	19.18		다툼없음					19.18
	286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835.00	835.00		다툼없음					835.00
	287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298.20	298.20		다툼없음					298.20
	288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289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5.00	5.00		다툼없음					5.00
	290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31.00	31.00		다툼없음					31.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수관	291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389.00	389.00		다툼없음					389.00
	292	취수장옆 HUME PIPE	2.57	2.57		다툼없음					2.57
	293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1,106.09	1,106.09		다툼없음					1,106.09
	294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768.00	768.00		다툼없음					768.00
	295	CWP PIPE(CWP~보일러건물)	3,840.00	3,840.00		다툼없음					3,840.00
	296	수처리 건물 관련	2.04	2.04		다툼없음					2.04
	297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0.39	0.39		다툼없음					0.39
	298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15,750.00	15,750.00		다툼없음					15,750.00
	299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1,050.55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4 내지 35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 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300	냉각수 심층배수로	1,592.00	0.00		상동. 본 시설은 급배수 시설임		상동	상동	상동	0
	301	CWP 취수관로 (CWP~보일러건물)	2,295.52	0.00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상동	상동	상동	0
	302	FIRE WATERLINE:소화관로(UNDERGROUND)	1,155.05	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분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03	옥외소화관	2,932.88		불특정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60호증 1내지14 을제61호증 1내지 11 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 을제83호증 39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2,932.88
	304	공업용수도수관	150.9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224p 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05	공업용수유공관	143.05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1283p 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상동	0.00
	306	재순환수관	2,847.2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0호증 1내지14 1~2호기건설지 311p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 을제83호증 40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07	전처리배관 (강관,PEM 수도관)	1,089.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783p 을제83호증 41	상동	0.00
	308	애쉬라인	4,320.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 을제83호증 42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	0.00
	309	폐수배관	134.5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10	회이송관련관	2,600.27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 을제83호증 43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회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임)	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11	섬프펌프관련관	1.2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6p 을제83호증 44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12	송수관 (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152.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2호증 1내지64 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 *지하매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00	
	313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1,588.00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IV 16-4p *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상동	0	
	314	CWP 옆 송수관	865.34		불특정	상동		상동	피고준비서면 2012.5.10참조 2014.04.17자 피고 준비서면 11면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315	소화관로	2,850.69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34호증1~16	상동	0	
	316	송수관(변압기지역)	54.68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건설지 1172P *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317	송수관(Fire Pump →Boiler Bldg)	114.46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3호증 1내지19 7,8호기 설계계산서1-5-19 *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상동	0	
	318	경유배관	792.00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을제32호증2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송유관 및 도관	319	1부두경유배관	4.95	0.00	비과세대상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을제32호증3B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20	도관(회이송관)	3,486.88	0.00	기과세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수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을제32호증53내지57 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00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321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9.00	9.00		다툼없음					9.00
	322	경유저장탱크송유관	3.50	3.50		다툼없음					3.50
	323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24	연료공급실송유관	41.20	41.20		다툼없음					41.20
	325	오일탱크관련송유관	1.50	1.50		다툼없음					1.50
	326	LO SERVICE PUMP TO BOILER	24.36	24.36		다툼없음					24.36
	327	LO SERVICE PUMP TO BOILER	3.57	3.57		다툼없음					3.57
	328	LO SERVICE PUMP TO BOILER	0.59	0.59		다툼없음					0.59
	329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2.03	2.03		다툼없음					2.03
	330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2.00	2.00		다툼없음					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31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38.58	38.58		다툼없음					38.58
	332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60	1.60		다툼없음					1.60
	333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138.56	138.56		다툼없음					138.56
	334	LO SERVICE PUMP TO BOILER	59.78	59.78		다툼없음					59.78
	335	LO SERVICE PUMP TO BOILER	45.57	45.57		다툼없음					45.57
	336	도관시설	15,147.19		불특정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을제32호증 1, 3~5, 19~49, 58~74, 76~8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5,669.48에서 15,147.19로 면적 정정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 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송유관, 송수관에 해당하지 않고, 7,8호기 도관1,24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13,893.69
	337	중유이송배관	77.83		불특정	상동		상동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806p *2013년 폐기시설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338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	48,986.40	0.00	비과세대상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은 2008년도 취득 시설임.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지436)에서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면적에 포함하도록 심판결정. 따라서, 7,8호기 최초점화일이 2007.11.14일이므로 2007년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최초점화일 이전인 2006년도에 임시사용 등을 받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도 포함되어야 함.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 을ㅁ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339	콘크리트대지	105.91	0.00	비과세대상	특정이 필요함. 콘크리트 대지는 비과세대상		지하기계실의 지붕으로 건축물로 확인되어 당초'수조'에서 건축물로 정정함.	을제56호증1내지3: 건축물 입증 및 지하1,2층 사진 을제33호증 46	피고 제출 증거로 건축물로 특정됨.	105.91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40	#1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341	#1 보조보일러제어실	212.15	212.15		다툼없음					212.15
	342	#1 비회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343	#1 사일로 전원실	52.00	52.00		다툼없음					52.00
	344	#1 외부화장실-2호기 뒤	7.28	7.28		다툼없음					7.28
	345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346	#1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347	#1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348	#1,2 물처리실	1,260.80	1,260.80		다툼없음					1,260.80
	349	#1,2 샤워장	395.18	395.18		다툼없음					395.18
	350	#1,2 유지창고	350.00	350.00		다툼없음					350.00
	351	#2 보일러실	2,904.49	2,904.49		다툼없음					2,904.49
	352	#2 비회제어실	47.00	47.00		다툼없음					47.00
	353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484.78	484.78		다툼없음					484.78
	354	#2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355	#2 터빈및주제어실	7,231.50	7,231.50		다툼없음					7,231.5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56	#2 보조보일러전원실	102.48	102.48		다툼없음					102.48
	357	#3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358	#3 서비스가스창고-1	28.00	28.00		다툼없음					28.00
	359	#3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360	#3 집진기 NO-1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61	#3 집진기 NO-2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62	#3,4 질소가스창고	74.00	74.00		다툼없음					74.00
	363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26,945.48	26,945.48		다툼없음					26,945.48
	364	#3,4 연료조질펌프실	0.00	0.00		다툼없음					0.00
	365	#3~6 물처리건물	2,865.87	2,865.87		다툼없음					2,865.87
	366	#4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367	#4 서비스가스창고-2	28.00	28.00		다툼없음					28.00
	368	#4 전기집진기실	1,550.50	1,550.50		다툼없음					1,550.50
	369	#4 집진기 NO-3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70	#4 집진기 NO-4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71	#5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72	#5 서비스가스창고-3	28.00	28.00		다툼없음					28.00
	373	#5 집진기 NO-5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74	#5 집진기 NO-6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75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26,096.71	26,096.71		다툼없음					26,096.71
	376	#6 보일러건물	6,986.20	6,986.20		다툼없음					6,986.20
	377	#6 서비스가스창고-4	28.00	28.00		다툼없음					28.00
	378	#6 집진기 NO-7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79	#6 집진기 NO-8	1,344.90	1,344.90		다툼없음					1,344.90
	380	(산업폐기물)저장창고	141.12	141.12		다툼없음					141.12
	381	(종묘)배양장창고	96.00	96.00		다툼없음					96.00
	382	가스창고-#2호기옆	24.00	24.00		다툼없음					24.00
	383	가스창고-2화학부옆	5.76	5.76		다툼없음					5.76
	384	가스창고-2화학부옆	7.92	7.92		다툼없음					7.92
	385	가스창고-고압	150.00	150.00		다툼없음					150.00
	386	간이초소 NO-1	5.76	5.76		다툼없음					5.76
	387	간이초소 NO-2	5.76	5.76		다툼없음					5.7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388	간이초소 NO-3	5.76	5.76		다툼없음					5.76
	389	간이초소 NO-4	5.76	5.76		다툼없음					5.76
	390	경비실(구정문수위실)	0.00	0.00		다툼없음					0.00
	391	경비실(신축)	351.25	351.25		다툼없음					351.25
	392	(구)종합사무실	4,500.59	4,500.59		다툼없음					4,500.59
	393	기상관측소	7.29	7.29		다툼없음					7.29
	394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72.00	72.00		다툼없음					72.00
	395	망루(신축)	9.91	9.91		다툼없음					9.91
	396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397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398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399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00	망루1형	12.79	12.79		다툼없음					12.79
	401	망루1형	12.35	12.35		다툼없음					12.35
	402	모의제어반	1,569.86	1,569.86		다툼없음					1,569.86
	403	무기고	66.96	66.96		다툼없음					66.9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04	배양장	562.50	562.50		다툼없음					562.50
	405	벙커	7.20	7.20		다툼없음					7.20
	406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18.56	18.56		다툼없음					18.56
	407	복합#1 가스터빈건물-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08	복합#1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09	복합#1 스팀터빈-1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410	복합#1,2 질소가스창고-1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11	복합#2 가스터빈건물_1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12	복합#2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13	복합#2 스팀터빈-1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414	복합#3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415	복합#3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16	복합#3 스팀터빈-2	9,387.02	9,387.02		다툼없음					9,387.02
	417	복합#3,4 질소가스창고-2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18	복합#4 가스터빈건물-2	1,190.35	1,190.35		다툼없음					1,190.35
	419	복합#4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20	복합#4 스팀터빈-2	9,387.03	9,387.03		다툼없음					9,387.03
	421	복합#5 거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422	복합#5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23	복합#5,6 질소가스창고-3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24	복합#6 가스터빈건물-3	1,093.45	1,093.45		다툼없음					1,093.45
	425	복합#6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26	복합#7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27	복합#7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28	복합#7,8 질소가스창고-4	25.97	25.97		다툼없음					25.97
	429	복합#8 가스터빈건물-4	1,212.20	1,212.20		다툼없음					1,212.20
	430	복합#8 보일러건물	998.51	998.51		다툼없음					998.51
	431	복합 경비실	57.86	57.86		다툼없음					57.86
	432	복합 공기압축기실 및 비상발전기실	245.58	245.58		다툼없음					245.58
	433	복합 급수펌프실	76.78	76.78		다툼없음					76.78
	434	복합 망루-1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35	복합 망루-2	12.99	12.99		다툼없음					12.9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소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건축물	436	복합 말루-3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37	복합 망루-4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38	복합 망루-5	12.99	12.99		다툼없음					12.99
	439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92.81	92.81		다툼없음					92.81
	440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204.52	204.52		다툼없음					204.52
	441	복합 염소주입실	252.58	252.58		다툼없음					252.58
	442	복합 유지창고	365.06	365.06		다툼없음					365.06
	443	복합 종합창고	3,096.34	3,096.34		다툼없음					3,096.34
	444	복합 주제어건물-1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445	복합 주제어건물-2	4,427.79	4,427.79		다툼없음					4,427.79
	446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173.05	173.05		다툼없음					173.05
	447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17.50	17.50		다툼없음					17.50
	448	부두접안정보실	15.12	15.12		다툼없음					15.12
	449	분석실가스저장고	17.64	17.64		다툼없음					17.64
	450	산소저장창고	35.00	35.00		다툼없음					35.00
	451	상탄살포제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52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55.50	55.50		다툼없음					55.50
	453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11.00	11.00		다툼없음					11.00
	454	석탄분쇄실 1	802.75	802.75		다툼없음					802.75
	455	석탄분쇄실 2	814.00	814.00		다툼없음					814.00
	456	석탄하역건물	198.09	198.09		다툼없음					198.09
	457	소각로	259.18	259.18		다툼없음					259.18
	458	소화수및원수펌프실	380.25	380.25		다툼없음					380.25
	459	송유및소화수펌프실	383.00	383.00		다툼없음					383.00
	460	순환수보조펌프실	299.75	299.75		다툼없음					299.75
	461	연료유공급펌프실	715.00	715.00		다툼없음					715.00
	462	연료유펌프실-#1,2호기	724.72	724.72		다툼없음					724.72
	463	염소주입실	622.16	622.16		다툼없음					622.16
	464	온배수양식동	504.00	504.00		다툼없음					504.00
	465	온배수양식장펌프실	21.60	21.60		다툼없음					21.60
	466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45.00	45.00		다툼없음					45.00
	467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5.30	5.30		다툼없음					5.3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68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7.93	7.93		다툼없음					7.93
	469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7.15	7.15		다툼없음					7.15
	470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6.37	6.37		다툼없음					6.37
	471	웅천 가압장	162.00	162.00		다툼없음					162.00
	472	웅천 사택	43.65	43.65		다툼없음					43.65
	473	유류가압펌프실	336.00	336.00		다툼없음					336.00
	474	유연탄작업관리실	1,227.08	1,227.08		다툼없음					1,227.08
	475	유연탄하역조정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476	입하탄시료채취실	287.10	287.10		다툼없음					287.10
	477	정문경비실	64.04	64.04		다툼없음					64.04
	478	정비고	611.00	611.00		다툼없음					611.00
	479	조탄실	147.11	147.11		다툼없음					147.11
	480	조탄실	253.52	253.52		다툼없음					253.52
	481	조탄실 1	140.00	140.00		다툼없음					140.00
	482	조탄실 2	301.75	301.75		다툼없음					301.75
	483	조탄실 3	414.40	414.40		다툼없음					414.4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484	조탄실 4	240.00	240.00		다툼없음					240.00
	485	조탄실 5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486	조탄실 6	160.00	160.00		다툼없음					160.00
	487	조탄실 NO-1	257.57	257.57		다툼없음					257.57
	488	조탄실 NO-10	116.80	116.80		다툼없음					116.80
	489	조탄실 NO-2	256.26	256.26		다툼없음					256.26
	490	조탄실 NO-3	269.68	269.68		다툼없음					269.68
	491	조탄실 NO-4	85.08	85.08		다툼없음					85.08
	492	조탄실 NO-5	85.85	85.85		다툼없음					85.85
	493	조탄실 NO-6	127.07	127.07		다툼없음					127.07
	494	조탄실 NO-7	1,143.42	1,143.42		다툼없음					1,143.42
	495	조탄실 NO-8	1,598.88	1,598.88		다툼없음					1,598.88
	496	조탄실 NO-9	398.23	398.23		다툼없음					398.23
	497	식당/강당	1,537.54	1,537.54		다툼없음					1,537.54
	498	(종합)사무실	6,900.23	6,900.23		다툼없음					6,900.23
	499	종합창고	7,144.22	7,144.22		다툼없음					7,144.2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00	주산 사택	55.72	55.72		다툼없음					55.72
	501	주산 취수장	161.00	161.00		다툼없음					161.00
	502	질소가스저장실	34.76	34.76		다툼없음					34.76
	503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504	초소1형	12.50	12.50		다툼없음					12.50
	505	초소2형	18.83	18.83		다툼없음					18.83
	506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07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08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09	초소2형	4.00	4.00		다툼없음					4.00
	510	콘테이너하우스	36.00	36.00		다툼없음					36.00
	511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12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13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14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7.84	7.84		다툼없음					7.84
	515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155.15	155.15		다툼없음					155.15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기재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16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2,072.90	2,072.90		다툼없음					2,072.90
	517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1,440.00	1,440.00		다툼없음					1,440.00
	518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1,152.00	1,152.00		다툼없음					1,152.00
	519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512.00	512.00		다툼없음					512.00
	520	탈황설비 엘브이 (LV)-02	145.54	145.54		다툼없음					145.54
	521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1	2,538.00	2,538.00		다툼없음					2,538.00
	522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2	2,234.75	2,234.75		다툼없음					2,234.75
	523	탈황설비 티티(TT)-01	107.39	107.39		다툼없음					107.39
	524	탈황설비 티티(TT)-02	313.57	313.57		다툼없음					313.57
	525	탈황설비 티티(TT)-03	156.81	156.81		다툼없음					156.81
	526	탈황설비 티티(TT)-04	417.29	417.29		다툼없음					417.29
	527	탈황설비 티티티(TTT)-01	595.92	595.92		다툼없음					595.92
	528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1,575.23	1,575.23		다툼없음					1,575.23
	529	트랜스퍼타워 18	217.18	217.18		다툼없음					217.18
	530	트랜스퍼타워 19	224.71	224.71		다툼없음					224.71
	531	트랜스퍼타워 20	1,323.18	1,323.18		다툼없음					1,323.1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원고, 보조참가인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32	트랜스퍼타워 21	226.19	226.19		다툼없음					226.19
	533	폐기물저장창고	230.67	230.67		다툼없음					230.67
	534	폐수처리건물	546.83	546.83		다툼없음					546.83
	535	폐수처리관리실	206.36	206.36		다툼없음					206.36
	536	해수소화펌프실	25.39	25.39		다툼없음					25.39
	537	해수인양펌프조작실	320.00	320.00		다툼없음					320.00
	538	홍보관	340.20	340.20		다툼없음					340.20
	539	홍보관 화장실	57.40	57.40		다툼없음					57.40
	540	회처리순환수펌프실	95.20	95.20		다툼없음					95.20
	541	회처리순환수펌프실	408.00	408.00		다툼없음					408.00
	542	화처리전원실	67.51	67.51		다툼없음					67.51
	543	회처리펌프제어실	23.80	23.80		다툼없음					23.80
	544	후문경비실	54.98	54.98		다툼없음					54.98
	545	석탄취급설비 제어실 증축	0.00	0.00		다툼없음					0.00
	546	오수처리펌프실	36.21	36.21		다툼없음					36.21
	547	저탄장 살수펌프 건물	193.09	193.09		다툼없음					193.0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48	석탄취급 전기실 및 정비원 후생건물	664.47	664.47		다툼없음					664.47
	549	중수처리 건물	666.35	666.35		다툼없음					666.35
	550	총질소 제거건물	456.73	456.73		다툼없음					456.73
	551	방카	7.20	7.20		다툼없음					7.20
	552	분진측정실	32.00	32.00		다툼없음					32.00
	553	망루	7.92	7.92		다툼없음					7.92
	554	경비실	10.00	10.00		다툼없음					10.00
	555	탈질설비운전원사무실	54.00	54.00		다툼없음					54.00
	556	자재보관창고	1,680.00	1,680.00		다툼없음					1,680.00
	557	수처리건물	2,603.99	2,603.99		다툼없음					2,603.99
	558	암모니아저장소	825.75	825.75		다툼없음					825.75
	559	탈황 #3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560	탈황 #3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561	탈황 #4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562	탈황 #4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563	탈황 #5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564	탈황 #5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565	탈황 #6 흡수탑	282.60	282.60		다툼없음					282.60
	566	탈황 #6 DUCT	840.00	840.00		다툼없음					840.00
	567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132.19	132.19		다툼없음					132.19
송전철탑	568	송전철탑	11,770.00	0.00	비과세대상	송전철탑은 7,8호기 건설하면서 2008년 취득한 시설임.	갑가제13호증	송전철탑은 임시사용승인일이나 시험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결정된 바 있는 한편, 조세심판결정에서도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심판결정함. 따라서, 해당 송전철탑 사용시기를 구분해 보면 2007년도 사업장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임시사용승인일: 2007.12.29 *가압시험일: 2007.12.28	참고자료2: 대법원2009도5350판례 참고자료9: 행정자치부심사결정서(2007-160호) 참고자료13: 조세심판결정서(2009지436) 을제28호증: 가압시험보고서 을제63호증제5내지10: 송전철탑 공사개요 및 면적산출 내역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0
합계			**660,228.07**	**378,528.12**							**462,104.6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 275-1)

컨베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BC12AB하단(B,C)	124.16	89.6	7 *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취소 원인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참고(순번275-2)

컨베이어설비명	피고 면적	오류 내용	인정 면적	차이
BC43A/B의 A	1,142.10	수평투영 오류	1,057.50	84.6
BC4A/B	827.51	상동	788.5	39.01
BC22	397.59	상동	365.6	31.99
BC23	391.5	상동	360	31.5
BC12A/B의 A	2,071.30	상동	1,770.23	301.07
BC61	531.81	상동	467.4	64.41
BC62	330.72	상동	300.3	30.42
BC63	396.4	상동	328	68.4
BC64 컨베이어	402.3	상동	346.5	55.8
BC66A/B	598.98	상동	475.7	123.28
BC53A/B의 C	988.22	상동	904.62	83.6
BC40A/B의 A	2,302.30	상동	1,995	307.3
BC33A/B	973.44	합계 오류	802.42	171.02
BC32A/B	775.96	합계 오류	664.48	111.48
			합계	1503.88